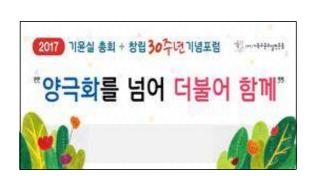


양류화를 넘어 더불어를 함께

2017. 3. 7(화) 오후 6:00~9:30 서울영동교회 교육관5층





발행일 | 2017년 3월 7일

발행인 | 홍정길 **편집인** | 정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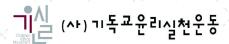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이메일_ cemk@hanmail.net

www.cemk.org



본 자료집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앙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 20% 이상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17 기윤실 총회 + 창립 **30**구년 기념포럼

양국학를 넘어 더불어 함께

2017. 3. 7(화) 오후 6:00~9:30 서울영동교회 교육관5층



2017년도 회원총회 회순

■ 1부 30주년기념포럼	
□ 기윤실과 기독시민운동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각 자매단체 대표
□ 종합토론	백종국 부이사장
■ 2부 총회	
□ 개회선언 : 성원보고	사회 : 백종국 부이사장
□ 개회기도	이장형 윤리연구소장
□ 사무회의	
• 회순 채택	사회자
• 전 회의록 채택	사회자
• 2016년도 사업 보고	사무처
• 2016년도 재정 보고	사무처
• 2016년도 외부회계 . 내부업무 감사보고	감사
• 정관 개정	사회자
• 임원 개선 (이사장 · 이사 · 공동대표 · 상집위원)	사회자
• 2017년도 사업 계획 보고	사무처
• 2017년도 예산 계획 보고	사무처
• 기타 토의	사회자
□ 폐회 선언	사회자
■ 기념촬영	

회순 채택	2017년도 회원총회 회순	4
	목 차	5
전 회의록 채택	2016년도 회원총회 회의록	6
2016년도 사업보고	2016년도 사업 요약보고	8
	2016년도 사업 세부보고	11
2016년도 재정보고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24
	운영성과표 부가 설명, 사업별 지출 부가 설명	
	2016년 후원자명단(개인/단체/기타통계)	28
2016년도 감사보고	2016년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30
	2016년도 내부 업무감사보고서	32
정관 개정	정관 개정안	34
임원 개선	신임.연임.사임 임원 명단	42
2017년도 사업계획 보고	2017년도 사업 계획안	45
	2017년도 사업개요, 사업일정	46
	2017년도 사업 세부기획안	49
	1.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49
	2.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i>50</i>
	3. 공명선거운동 - 19대 대통령선거	51
	4. 부채해방프로젝트 	52
	5. 사무처사업 - 창립30주년 종교개혁500주년기념 6. 자치기구 협력운동 소개	53 54
2017년도 예산계획 보고	2017년도 예산 계획안	55 55
부록	①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관	58
	②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립취지문	63
	③ 2016년 사업평가 및 2017년 신규사업 설문조사	65
	④ 기윤실 발간 자료 소개(2007년~2016년)	68
전국기윤실협의회	전국기윤실협의회 소개	<i>69</i>
기윤실 소개	기윤실 소개	<i>70</i>

2016년도 회원총회 회의록

■ 일시 : 2016년 3월 15일(화) 오후 7시~8시30분

장소 : 서울영동교회 소예배실참석 : 회원 36명, 비회원 37명

* 비회원은 정관상 6개월 미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참관인을 뜻합니다. 비회원은 총회에 서 의결권이 없고, 계수가 정확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총회 개회]

- 오후 7시. 백종국 부이사장이 지역기윤실 참석자 및 내빈을 소개하다.
- 오후 7시 5분. 홍정길 이사장이 회원 점명을 하다. 현재 회원 32명이 참석, 정관 13조에 의거하여 2016년 기윤실 총회 개회를 선포하다.
- 이의용 이사가 개회기도를 하다.
- 사회자가 회순 채택을 요청하고 회순을 채택하다.
- 사회자가 전 회의록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2015년도 사업 · 재정결산 · 감사 보고]

- 조제호 사무처장이 2015년도 사업 및 재정결산을 보고하다.
- 이천화 회계사가 회계감사 보고를 이상민 변호사가 업무감사 보고를 하다.
- 사회자가 2015년 사업 및 재정결산, 감사보고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질문없음)
- 사회자가 2015년 사업 및 재정결산 보고, 감사보고에 대해 가부를 묻고,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안건 1: 정관 개정]

- 조제호 사무처장이 정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2005년 정관 개정이후 6차례에 걸쳐 정관개정을 총회에서 의결했지만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 주무관청인 서울시 종무팀 담당자와 협의하여 2005년 정관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정관변경 내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이번 총회에서 의결하고,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로 했다.
 - 2005년 이후 6차례의 정관변경의 큰 방향은 대의원총회 절을 총회로 변경(제3장 1절), 공동대표 절의 신설(제3장 4절), 제3장 제5절 집행위원회 절의 상임집행위원회로 변경(제3장 5절), 전국기윤실협의회 절의 신설(제3장 8절)이다.
- 사회자가 정관개정안에 대해 질문을 요청하다.(질문없음)
- 사회자가 정관개정안에 대해 가부를 묻고,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안건 2 : 임원 개선]

- 사회자가 신임 및 연임임원 대상자를 소개하다.
 - 신임 이사 : 박제우(아이티엘 엔터프라이즈 부장), 박종근(서울모자이크교회 목사), 배종석(고려

대 경영학과 교수)

- 연임 임원 : 홍정길(이사장), 백종국(공동대표), 강영안, 김홍섭, 방선기, 송인수, 이의용, 전재중, 정애주, 조흥식, 주광순(이상 이사)
- 사회자가 임원개선안에 대해 질문을 요청하다.(질문없음)
- 사회자가 임원개선안에 대해 가부를 묻고,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2016년도 사업계획 · 예산계획 보고]

- 조제호 사무처장이 2016년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핵심사업인 양극화해소운동을 중심으 로, 3년주기로 조사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공명선거운동, 기독교윤리실천학교를 전개해 나갈 것임을 보고하고, 예산계획안을 설명하다.
- 사회자가 2016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질문없음)
- 사회자가 2016년 사업 및 예산계획에 대해 가부를 묻고,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기타 토의]

- 홍정길 이사장이 양극화해소운동이 이론적인 연구로 끝나지 않고 현장을 이해하는 운동으로 구 체화 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전주기윤실 오성택 대표가 동성애와 이슬람(할랄)에 대해 기윤실이 사업안건으로 다루면 좋겠다. 고 의견을 개진하다.
- 조제호 사무처장이 오늘 사업안은 주요안건만 다룬 것이며 지금 의견은 상임집행위원회에 안건 으로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하다.
- 여수기윤실 곽종철 대표가 여수기윤실 명칭을 광역단위인 전남기윤실로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다.
- 조제호 사무처장이 지역기윤실은 광역이 아닌 도시단위로 활동하는데 광역단위로 확장하는 것은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다.
- 윤영식 회원이 이슬람(할랄) 문제는 가볍게 다루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 다고 말하다.
- 홍정길 이사장이 허구는 이슬람 문제는 현장의 입장을 들으며 심층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하다.
- 청주기윤실 백종원 협동간사가 이슬람, 성소수자 주제도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양극화해소운동 차원에서 다뤄지면 좋겠다면서 이주노동자나 성소수자들의 자살률이 높은데 기윤 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으로 잡고 이 사안에 접근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총회 폐회]

- 8시30분, 사회자의 폐회선언으로 2016년도 회원총회를 마치다.
- ※ 총회 이후 2분 순서로 신년강연회(강사 : 임성빈 공동대표)를 개최히다.
- ※ 신년강연회 이후 전체 사진촬영을 하다.

2016년도 사업 보고

9월

1. 2016년 사업보고

(1) 2016년 활동내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자발적불편운동 부활절 캠페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3가지 방법" 제2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 "기독교윤리, 정치가에게 묻다."(100주년기년교회 사회봉사관)

기윤실회원총회 + 신년강연회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함께" (서울영동 교회)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부활절 생명을 위해 헌금해주세요.

장신대 봄사경회 기관목회특강 토크콘서트(높은뜻섬기는교회) 4.13총선 기독유권자운동 Talk Pray Vote 캠페인 4.13총선 후보자의 교회방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종이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해요." 기윤실포럼 "한국경제양극화 진단과 대안"(환경재단)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4.13총선 개표참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팽목항기도회 (진도 팽목항) 기윤실포럼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갈등현상"(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착한커피로 교회 모임에 향기를 더하세요"

[성명서] 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시행을 촉구합니다.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대중교통으로 교회가요." 회원가입 후원증액이벤트 "기윤실 운동에 더 많이, 더 크게 동참해주 세요."

부교역자 동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 목회자윤리강령28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연동교회 다사랑홀) 교회세습하지맙시다 출판기념 북토크(한겨레미디어카페 후)

서울영동교회방문 부스운영 [긴급좌담]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것인가?(100주년기념교회 사회본사과

[성명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성혐오에 대한 기독교의 반성 "shall we overcome?"(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홈)

[성명서] 김영란법 시행령안, 적극지지한다. 제주평화순례 "우리 함께 평화할래요?"(제주도 강정) 서울서문교회방문 부스운영

기독교사대회 기윤실교사모임 부스운영 지원 [성명서]이동현 목사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 기윤실 포럼 "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기윤실 회의실) 전국기윤실수련회(대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전략회의(한빛누리)

서교동교회 방문 부스운영 장신대 현장실천학습 O.T(기윤실 회의실)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한 생명 구하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기독인 동조단식

[성명서] 핵에 의존한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을 환영하며, 교회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남김없이 먹고, 아낌없이 나누기" 작은교회박람회 부스운영(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활동가대회 - 성서한국

10월 제3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윤리"(기윤실 회의실)

> 목회자 윤리세미나(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부천평안교회 방문 부스운영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이웃에게 감사의 손길"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

기윤실 회원간담회 "한 말씀" 전국기윤실 간사협의회(기윤실 회의실)

주님의 보배교회 방문 부스운영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화려한 빛보다 따뜻한 빛이 되어주세요"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정의로 화 평과 안전의 시대를 만듭시다!

2016년 좋은교회상 시상식 (치유하는교회)

[토론회] 늘어나는 종교인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국회의 워회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연합예배 (서울역 광장) 북한수해복구를 위한 '사랑의 원자탄'을 날립시다

2016년 기윤실 회원총회 자료집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안내서 기윤실 413총선 기독유권자운동 "Talk Pray Vote"

한국경제양극화 진단과 대안 자료집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갈등현상: 주거 교육 세대 노동 자료집

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자료집 부교역자 동역서약서 모범안 자료집

여성혐오에 대한 기독교의 반성 자료집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윤리강령28 단행본

발간 자료

12월

※ 기윤실의 모든 행사 자료집(발간 도서 제외)은 PDF 파일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2016년 사업요약표

110	HEFOI	및 사업명	OOFTHE
^[î	4년위 -	文 시입당 -	요약 내용 1. 자발적불편운동 기독교세계 연재(총11회)
정직 윤리 운동		자발적 ^글 편운동	N 글딱돌면군당 기득교세계 연제(당 11외) 1월 왜 자발적불편인가? 2월 과대포장은 멀리하고, 진심을 나누는 설날 만들기 3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3가지 방법 4월 Talk, Pray, Vote
	기·	독교윤리 실천학교	1. 제2회 윤리학교 "기독교윤리, 정치가에게 묻다" 2. 제3회 윤리학교 "인공지능시대의 기독교윤리"
			2. 제3외 표디역표 · 한당시당시대의 기속표표디 1. 부교역자 동역서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
교회	사회?	교회의 덕책임 운동	2. 이동현 목사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 3.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신뢰 운동		습반대운동 (협력)	1. 〈교회세습, 하지맙시다〉 출간 및 기념 북토크
		[회재정 성 운동 (협력)	1. "재정의 언어로 본 교회사역" 세미나 2. 목회자소득세신고 어렵지 않아요 개정판
사회 정치		5선거운동 선기독유권자 운동	1. Talk Pray Vote 캠페인(전단배포) 2. 선거후보자의 교회방문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발표
윤리 운동	윤리		1. 한국경제양극화 진단과 대안 2.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갈등현상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자치			1. 목회자윤리 단행본〈목회자 윤리28〉출간 2. 목회자윤리 단행본〈목회자 윤리28〉출간기념 기자간담회 및 세미나
기구	사회	복지위원회	1. 2016년 좋은교회상
	연대운동		1. 공동사업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팽목항 기도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연합예배, <알라>출판기념좌담회 등 2. 정기분담금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성서한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활절연합 예배, 낙태반대운동연합, 성탄절연합예배
11.	회원/회의		 2016년 회원총회 회원홍보운동 후원교회 방문/신규 회원 발굴(총5개 교회/19명) 10년 근속회원 감사(선물발송) 회원인터뷰(1명) 홍보부스운영(작은교회박람회, 좋은교회상시상식) 회원모임 "회원 한 말씀" 홍보물 제작(포스터 등) 각종 회의(이사회, 상집, 간사워크숍 등) 비전컨설팅
사무처		현안대응	[좌담]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명]김영란법 시행령안, 적극 지지한다 [논평]청탁금지법 시행을 환영하며, 교회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 서겠습니다 [성명]핵에 의존한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럼]여성혐오에 대한 기독교의 반성 [성명]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입장 [성명]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정의로 화평과 안전의 시대를 만듭시다! [모금]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사랑의 원자탄'을 날립시다 [성명]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	국기윤	실협의회	1.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 2. 전국기윤실수련회 3. 전국기윤실간사회의

(3) 2016년 사업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주요사업 만족도 평가

구분	사업명	4점 만점	1	2	3	4
	자발적불편운동 :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연재	3.3점	0명	8명	19명	22명
	기독교윤리실천학교 : 정치, 인공지능	3.2점	0명	10명	21명	18명
주요	교회의 사회적책임운동 : 부교역자 동역서약서	3.3점	0명	9명	17명	23명
사업	기윤실 포럼 : 양극화 포럼	3.3점	1명	5명	20명	23명
	공명선거운동 : 413총선 캠페인	3.3점	0명	11명	13명	23명
	현안대응운동 : 성명서발표	3.4점	1명	3명	18명	<u>27명</u>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윤리강령28> 단행본	3.4점	0명	5명	18명	25명
협력	사회복지위원회 좋은교회상	3.2점	0명	7명	23명	18명
사업	교회세습반대운동	3.5점	1명	3명	15명	<u>30명</u>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교회재정세미나	3.5점	1명	3명	16명	28명

2) 운동방향을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수행할 사업은? (1~2개 선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직윤리운동	41명(18.7%)	28명(14%)	28명(20%)	30명(17%)	8명(16%)
교회신뢰운동	61명(27.8%)	48명(23%)	37명(26%)	36명(20%)	15명(30%)
사회정치윤리운동	37명(16.8%)	48명(23%)	29명(21%)	38명(21%)	13명(26%)
네트워크운동	31명(14.1%)	26명(13%)	7명(5%)	14명(8%)	1명(2%)
윤리연구운동	29명(13.2%)	31명(15%)	22명(15%)	34명(19%)	7명(14%)

- ▶ 기본적으로 교회신뢰운동과 사회정치윤리운동의 비율이 높음
- ▶ 2012년~2015년 평가까지는 중복투표 가능, 2016년 조사는 단일투표

※ 2016년 사역평가 설문조사 전체 내용은 본 자료집 65~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비: 71,510원

2016년도 사업 세부 보고

[정직윤리운동] 자발적불편운동

1)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기독교 세계> 연재

① 연재기간: 2016년 01월 ~ 12월 (약 12개월)

② 협력내용: "기윤실과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시리즈"를 제목으로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내용을 매월 발행되는 감리교단지 <기독교 세계>에 한 페이지 구성으로

약 12개월, 총11회 연재함

③ 연재주제

회차	발행	주제	캠페인 실천내용
1	1월호	왜 자발적불편인가	
2	2월호	과대포장은 멀리하고, 진심을 나누는 설날 만들기	장바구니사용하기실속포장, 친환경포장 제품구매하기칭찬 격려 위로하는 명절만들기
3	3월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3가지 방법	고난주간 한끼금식하고 기부하기헌혈증서 기부하기미디어 금식하기
4	4월호	Talk, Pray, Vote	선거관심 정책 살펴보기기도하기투표하고, 투표독려하기
5	5월호	착한커피로 교회모임에 향기를 더하세요	교회 내 카페 공정무역 원두 사용하기교회 자판기 공정무역 카페 만들기공정무역 상품 구매하기
6	6월호	대중교통으로 교회가요	대중교통이용하기이웃끼리 카풀하기불편한 자리부터 주차하기
7	7/8호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쿨맵시 착용교회십자가등 소등하기적정온도지키기
8	9월호	한 생명살리기	 생명보듬주일지키기 생명보듬 페스티벌 걷기대회 참여하기 나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기
9	10월호	남김없이 먹고 아낌없이 나누기	지구촌 빈곤을 위한 기부하기먹을만큼 준비하고, 남기없이 먹기친환경 식재료 구매하기
10	11월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이웃에게 감사의 손길	가족들과 1일 자원봉사하기교회 절기물품 친환경제품 구매하기추수감사헌금은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기
11	12월호	화려한 빛보다 따뜻한 빛이 되어주세요	교회성탄절 간소하게 꾸미고 조명줄이기 송년회는 검소하게 이웃과 함께하기 산타대신 특별한 선물하기

④ 연재 페이지



















사업비: 1,785,810원

[정직윤리운동] 기독교윤리실천학교

1) 제 2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 "기독교윤리, 정치가에게 묻다"

① 취지 :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현장에서 일하는 기독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인 으로서 각자의 정치적 관점을 정립함

② 개요

• 일시 : 2016년 3월 10, 17, 24일(목), 오후 7시 ~ 9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3층 세미나실

• 회비 : 4만원(후원회원 3만원) *개별강좌 1만원

• 참가 : 매주 평균 10명 내외

③ 순서/강사

회차	제목 강사		참석
1회	보수와 정치	차세원(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 보좌관)	11명
2회	현장에서 보는 정치	권오재(더불어민주당 임수경 의원실 보좌관)	7명
3회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김형수(녹색당 서울시당 상근자)	14명

2) 제 3회 기독교윤리실천학교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윤리"

① 취지 : 올해 이례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은 바둑대국이 있었다. 충격적인 대국 결과만큼이 나 사람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눈에 띄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과학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컴퓨터가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가능한가? 컴퓨터에게 양심이나, 배려와 희생 같은 윤리의식도 생길 수 있는가? 또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② 개요

일시: 2016년 10월 18일(화)~11월 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 회비 : 2만원(후원회원 3만원) *개별강좌 1만원

• 참가 : 매주 평균 10명 내외

③ 순서/강사

회차	제 목	강 사	참석
1회	인공지능(알파고, 딥러닝), 너의 정체가 뭐냐?	정석오	15명
2회	인공지능이 판사가 된다면 어떨까?	성기진	9명
3회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박찬수	8명

④ 참여자 후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결과를 올바르게 예측하여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하고 막연한 두려움은 거두 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가오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미래에 대 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살아가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한나 참가자-

사업비: 1,619,200원

[교회신뢰운동] 교회의 사회적책임운동

1) 부교역자 동역서약서 모범안 발표

① 언론발표회

• 일시 : 2016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

• 발표 : 조성돈 본부장,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

• 연합뉴스, 국민일보, CBS, 기독공보(예장통합), 기독신문(예장합동), 기독교연합신문(예장백석), 기독교타임즈(기감), 한국성결신문(기성), 뉴스앤조이, 기독일보, 뉴스미션, 뉴스파워, 뉴스앤넷, CGNTV, GOODTV 등에 보도

② 사용현황

• 사용 중인 교회 : 강남동산교회 • 사용 예정인 교회 : 은혜샘물교회

2)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① 취지: 전병욱 목사(전 삼일교회, 현 홍대새교회)를 시작으로, 2016년 이동현 목사(전 라이즈업 코리아 대표)의 성범죄사실이 드러나면서 종교인의 지위를 남용한 성범죄 현실을 꼬집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② 개요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오후 2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③ 순서/강사

순서	제 목	순서자		
인사말	남인순(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장), 권미혁(국회의	· 기원)		
발제 1	종교인 성폭력 범죄의 현황 및 증가원인	한국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한 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발제 2	종교인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	김병규 변호사 (기독법률가회)		
토론	사회 : 조성돈 본부장 토론 : 발제자, 신희영(법무부 검찰국 검사) 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 참고자료 :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문직군별 성폭력범죄 검거인원 수에 관한 경찰청 정 보공개자료.

표1. 전문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수

구분 (명)	소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기 타 전문직
′10년	622	69	3	26	108	12	46	358
′11년	650	69	3	17	93	10	47	411
′12년	685	88	5	22	87	10	44	429
′13년	747	95	9	31	96	13	53	450
′14년	762	83	2	27	93	15	68	474
′15년	861	109	1	36	111	11	63	530
′16년 11월	934	107	7	23	93	11	85	608

표2. 전문직군 중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수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1월
108	93	87	96	93	111	93

표3. 종교인 성폭력 범죄자 유형별 검거인원

구분 (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1월
계	108	93	87	96	93	111	93
강간· 강제추행	98	89	81	92	83	105	88
카메라등 이용촬영	4	2	5	4	8	5	4
통신매체 이용음란	6	2	1	0	1	1	1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	-	-	0	1	0	0

[교회신뢰운동] 교회세습반대운동

사업비: 4,000원

1) 〈교회세습, 하지맙시다〉출간

① 제목:교회세습,하지맙시다

② 책임필자 : 배덕만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연구원)

③ 목차

• 1부 : 세습과 교회 - 배경과 원인, 역사와 현황, 주장과 특징

• 2부 : 세습과 저항 - 저항의 역사, 저항의 근거, 저항의 성과

• 3부 : 세습과 신학 - 구약학적 고찰, 신약학적 고찰, 조직신학적 고찰, 윤리학적 고찰, 사회학적 고찰

• 부록 : 변칙세습으로 확인된 교회, 직계세습으로 확인된 교회 등

• 추천사 : 손봉호 (자문위원장), 이문식 목사

④ 출판: 2016년 상반기 홍성사를 통해 출판

2) 〈교회세습, 하지맙시다〉 출간기념 북토크 "OUT 교회세습"

① 취지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활동 평가 및 교회세습에 대한 대중적 인식확산 및 도서홍보

② 개요

• 일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후 19시

• 장소 : 한겨레미디어카페 후

• 주최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 협력 홍성사

③ 순서/강사

• 사회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

• 배덕만 교수(책임필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 김동호 목사(세반연 공동대표, 높은뜻연합선교회)

• 방인성 목사(세반연 실행위원장, 함께여는 교회)



사업비: 2,011,000원

[교회신뢰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1) 2016년 교회재정세미나 "재정언어로 본 교회사역"

- ① 취지 : 신학생들에게 와닿지 않을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개인과 교회가 마 주하는 재정을 책임 있게 다루게 하기 위함
- ② 일시/장소: 2016년 10월 20일(목) 오후12시~13시 30분
- ③ 순서
- 발제1 : 사역자의 재정관리와 공적의미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 발제2 : 교회의 재정 투명성과 공적책무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질의응답
- ④ 참가인원: 30명

사업비: 2,383,470원

[사회정치윤리운동] 기윤실 포럼

1) 2차 기윤실 포럼 "한국경제양극화 진단과 대안"

① 취지 : 한국사회의 주요한 갈등이 양극화에서 비롯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서 의 양극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을 짚어보기 위 함

② 개요

• 일시 : 2016년 4월 1일(금) 오후 19시~21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참가: 20여명

③ 순서/강사

• 사회 :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기윤실 이사)

- 발제1 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양극화 _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 기윤실 공동대표)
- 발제2 양극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윤덕룡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
- 종합토론
- ④ 평가 : 기윤실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 이사 등 기윤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기윤 실 내부에서의 양극화 논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참석자가 저조 개선점.

2) 3차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갈등현상 : 주거 교육 세대 노동

① 취지 : 경제양극화로 인한 사회 곳곳에서 갈등현상을 탐색. 다양한 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각 영역에서 양극화로 빚어지는 사회 갈등현장을 현실감 있게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

② 개요

•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후 15시 ~ 17시

• 장소 :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 참가 : 40여명

③ 프로그램

- 사회 : 신동식 본부장 (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 발제 1 주거 고석동 사무국장 (전국세입자협회)
- 발제 2 교육 안상진 부소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 발제 3 세대 오찬호 저자 (『진격의대학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발제 4 노동 우상범 실행위원(평화누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종합토론
- ④ 평가 : 특히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해당 주제가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이 라고 파악됨. 각 발제자들이 명망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몸소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다보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옴

사업비: 895,000원

3) 4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① 취지 : 양극화 해소 구체적인 실천과제 탐색 및 2017년 기윤실 사업 선정을 위한 내부 간담회

② 개요

• 일시 : 2016년 8월 11일(목) 오후 5시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③ 프로그램

• 발제 1 부동산 소득과 양극화 _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 발제 2 교육양극화 문제 _ 송인수 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발제 3 사회여론의 양극화/극단화와 한국교회 양희송 대표(청어람ARMC)

• 발제 4 비영리영역에서의 양극화 _ 최호윤 회계사(나눔과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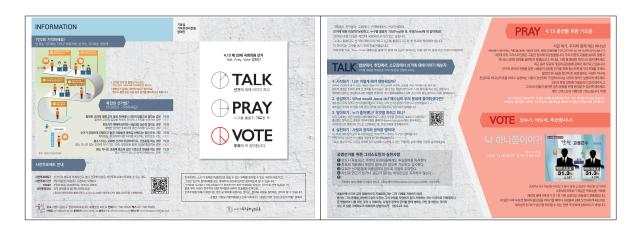
• 종합토론

④ 평가 : 내부간담회로 진행. 기윤실 운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기윤실의 양극화 의제에 대한 평가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기회가 됨

[사회정치윤리운동] 4.13 총선 공명선거운동

1) Talk Pray Vote 캠페인

• 캠페인 전단지 제작해서 전국에 약 15,000부 배포



2) 후보자교회방문 인식조사

- ① 인터넷 조사를 통해 192명에게 선거기간에 후보자의 방문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 ② 주요 결과
 - 교회에서 선거 후보자를 예배 또는 교회 내 모임에서 소개하거나 인사시키는 것을 목격한 경험

예	132명	68.7%
아니오	60명	31.3%

• 공정하게 소개나 인사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는지 여부

예	61명	46.2%
아니오	71명	53.8%

• 선거 후보자를 예배 또는 교회 내 모임에서 교인들에게 소개하거는 것에 대한 인식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소개시키거나 발언기회를 부여해도 괜찮다	25명	13.0%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개만 하는 것은 괜찮다	49명	25.5%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개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95명	49.5%
후보자가 출석교인인 경우에만 인사를 시키고 발언기회를 주는 것은 괜찮다	23명	12.0%

3) 개표참관단 활동

• 희망정치시민연합, IVF사회부, 새벽이슬 등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표참관단 진행.

[자치기구] 기독교윤리연구소

1) 〈목회자윤리28〉도서발간

① 취지 : 목회자 윤리 문제가 우리 사회와 교계의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 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지난 3년간 세 번에 걸쳐 목회자윤리 심포 지엄을 목회자와 돈, 목회자와 성, 목회자와 교회정치라는 주제로 개최 하여 한국의 목회자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고 고민을 나누어 왔다. 기독교윤리연구소는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하여 차제에 목 회자 윤리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회자 윤리 문 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새로운 필진 을 구성해 본 단행본을 제작하게 되었다.



사업비: 1,187,969원

② 목차

범주	이름	소속
서론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편집위원장
제1장 목회자는 누구인가?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편집위원장
제2장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	송준인	청량교회 담임목사
제3장 목회자와 교회정치	임성빈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제4장 목회자의 경제생활	신기형	이한교회 담임목사
제5장 목회자의 성윤리	신원하	고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제6장 목회자의 사회활동	이장형	백석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결론		
부록		

③ 출판

• 출판 : 홍성사 • 분류 : 목회 사역 • 규격 : A5변형 (152X205) • 면수 : 324면 • 가격 : 12,000원 • ISBN : 978-89-365-1157-9 03230 • 출간일 : 2016년 6월 8일

※ <목회자윤리강령 28>에 대한 피드백

- 국민일보 "목회자, 죄에 더 예민해야... 성식자로서 정체성 재확인을" http://bit.ly/29xcEQh
- 연합뉴스 신간들춰보기 목회자윤리강령28 http://bit.ly/29Gkuek
- 한국기독공보(통합)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여기에" 기윤실, 목회자 윤리 강령 28 출간 "목회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가이드 라인 제시" http://bit.ly/29OEgmp
- 크리스천투데이 "목회 현장의 여러 윤리적 문제들 다루는 교과서" http://bit.ly/1ZVtxYU
- CBS 노컷뉴스 "(기존의) 목회자 윤리강령 사실상 유명무실" http://bit.lv/29MwmLs
- ⇒ 《목회자윤리강령28》은 국민일보, 기독공보, 등 교단신문 뿐만 아니라 CTS, CGNTV 등 교계방: 송에서도 보도되었으며,「목회와신학」「주간기독교」 월/주간지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주었습니다.

2) 〈목회자윤리28〉 도서발간 출판기념 기자간담회 및 출판기념 세미나

① 취지: 출판된 도서 홍보

② 개요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 100주년 기념교회 사회봉사관

③ 내용/ 순서

발제 1. 목회자의 경제윤리 _ 신기형 목사(이한교회 담임목사) 발제 2. 목회자의 성윤리 신원하 교수(고신대신대원, 기독교윤리연구소 운영위원)

④ 참가자 후기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 된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목회자들의 기본이라 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윤리의 내용이었다. 지도자로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성도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은 굳이 목회자 윤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부분조차 목회자의 절대적 인 영적 권위라는 미명 하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목회자 역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공동 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 을 하게 되었다.나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연약한 지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 짐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현장실천참가자 박나래)

사업비: 34,000,000원

[자치기구] 사회복지위원회

1) 시상부문

- ① 참좋은 교회상 1곳
- 교회운영, 재정 등 모든 면에서 기독교 윤리를 모범적으로 잘 실천하여 사회신뢰도가 높은 교회
- 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4곳 (대형, 중형, 소형, 특수 목회 각 1곳씩)
-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기독교 사회복지활동을 잘하는 교회
- ③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3곳 (해외 1곳 신설 포함)
- 해외 및 국내 전도부문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귀감이 되는 교회
- ④ 다음세대를 키워가는 교회 1곳
-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비전수립과 활동을 왕성하게 잘하는 교회

2) 진행개요

① 신청 및 추천기간 : 2016년 7월 25일(월)~8월 26일(금)

② 심사과정: 1차 추천 및 신청서류 심사 - 9월 25일(금)까지

2차 현장 실사 - 1차 통과한 교회, 11월 12일(토)까지

③ 시상식: 12월 12일(월) 오후2시 치유하는교회

④ 시상: 좋은교회상 기념동판, 상패, 상금

⑤ 주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⑥ 후원 : (주)소망글로벌

3) 2016년 좋은교회상 수상교회

3) ZOIOL: 1				
부문	교회	담임 목 사	지역	심사평
특별상	치유하는교회	김의식	서울	기윤실 운동의 정신에 동참하여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교회로서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역에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좋은 교회상	동래중앙교회	정성훈	부산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교육에 힘쓰며 시각장 애인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여 실로암 안과병원의 개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선교박물관을 개관하여 18대 부산시 박물관으로 등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당교회	김광철	연천	DMZ 가까이 민통선(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의 특성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군부대와 농촌선교 및 복지시설을 도와 지역사회교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대중앙교회	이세광	부천	전교인이 1년에 한번 씩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독거노인 및 어려운 가정에 도배 및 방역, 방충망 또는 방한지를 설치하며 무료합동 결혼식 을 통해 어려운 가정의 결혼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회	세계로 교회	김성기	대전	1979년 9월 11일 법무부 갱생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소자, 수용자, 소년원생 교정교화에 힘쓰며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간접비용을 줄여 안 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남군산 교회	이종기	군산	"사랑의 장보기"를 통해 보육원 원아들이 가정 공동체 경험의 기회를 갖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택동산교회	이춘수	평택	해외 가난한 지역 빈민들과 장애우, 120여 코피노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한비 I.C.T센터와 자동차 정비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전도하 는	울산삼산교회	김원필	울산	농어촌 및 도시지역 미자립 교회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전도팀을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를 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니카라과 생명수 교회	김인선	니카라과	버려진 아이들을 영육 간에 양육하여 다음세대의 리더로 기르는 귀한 사역을 이뤄가고 있는 교회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세대를 키워가는 교회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서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기 적절한 건축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학원 선교, 기숙자 O.T 숭기연 M.T 등 예배자 훈련을 통해 다음세대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대운동] 공동사업 / 정기분담금 / 비정기 지원금 사업비 : 2,742,000원

사업명	내용	사업비
공동사업	1.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팽목항 기도회(4월23일) •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명 발표 2.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KTX해고 여승무원 • 주제 : 어둠은 가고 빛이 오니 • 일시/장소 : 12월25일(일)오후3시/서울역 광장 • 주최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준비위원 회 3. 〈알라〉출간기념 특별좌담회 • 일시/장소 : 01월22일(금)오후7시30분/은혜와선물교회 • 주최 : IVP • 후원 : CBS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숭실대 가치와윤리연구소 은 혜와선물교회 4.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사랑 태아살리기 봄정기 캠페인' • 일시 : 5월7일(토), 5월 21일(토), 5월 28일(토) • 장소 : 목동, 서울숲 • 주최 : 낙태반대운동연합 5. 2016 제주평화순례 "우리함께 평화할래요?" • 일시 : 7월 18일(월)~23일(토) • 장소 : 제주 강정마을 및 제주일대 • 주최 : 갈등전환센터, 교회개혁실천연대, 개척자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성서대전, 새벽이슬, 평화누리, 청어람씨, IVF사회부	502,000원
정기분담금	1. 월 정기 : 대한민국교육봉사단, 성서한국 2. 연회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낙태반대운동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그리스도인연대	2,240,000원

2016년도 사업보고

[사무처] 회원총회 / 회원홍보운동 / 전국기윤실협의회 사업비: 12,887,800원

사업명	내용	사업비
2016년 회원총회	1. 주제 :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 2. 일시/장소 : 3월15일(화) 오후6시 /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3. 주요의결 • 신임임원 선출 : 이사 3인(박제우, 박종근, 배종석) • 연임임원 선출 : 이사 11인(홍정길 외 10명)	3,505,410원
회원 홍보운동	1. 신규회원/회비증액 이벤트(6월 1일~ 30일) • 이벤트 결과 : 신규회원 3명, 후원증액 3명 2. 회원교회 방문(7월~12월) • 서울영동교회 서울서문교회 서교동교회 부천평안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총5곳) • 방문결과 : 신규회원 19명 가입 3. 기윤실 회원인터뷰 : 신규회원 1명 4. 1주년 및 10년 근속회원 감사 • 회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10년 근속회원에게 수건을 선물로 발송 5. 홍보부스운영 : 2016 작은교회 박람회, 사복위 좋은교회상 시상식 6. 회원간담회 "회원 한 말씀" • 일시/장소 : 11월15일(화) 오후7시 30분 /기윤실 • 참가 : 10명 7. 기윤실 홍보물 제작 : 홍보브로슈어, 홍보물 8. 장신대 교회밖 현장실천 : 4명 인턴십	2,073,184원
기타	1. 상임집행위원회 3회 (7/16, 9/23, 11/26)2. 이사회 1회 (2/23)3. 간사워크숍 1회 및 리트릿 1회 (1/14, 6/20~22)4. 본부장회의 3회 (6/2, 10/27, 12/27)	1,600,660원
현안대응	 [좌담]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명] 김영란법 시행령안, 적극 지지한다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을 환영하며, 교회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성명] 핵에 의존한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럼] 여성혐오에 대한 기독교의 반성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기독교육리실천운동의 입장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며, 정의로 화평과 안전의시대를 만듭시다! [모금]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사랑의 원자탄'을 날립시다 [성명]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1,539,056원
전국기윤실 협의회	1. 전국기윤실수련회(대전 청주 공동주최) • 일시/장소 : 8월15일(월)~16일(화) /산너머남촌펜션 • 참석 : 대전(8명), 부산(3명), 서울(4명), 익산(4명), 진주(6명), 청주(5명) 전주 (7명) = 총37명 • 예배, 계룡산,발제"한국사회의양극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토론회 등 2. 전국기윤실협의회 대표자회의 • 일시/장소 : 6월 8일(금) 오후2시 /대전기윤실(민생상담네트워크새벽) • 참석 : 서울 청주 대전 여수 익산 전주 (배석 대구) • 안건 : 지역기윤실 활동정비, 여수기윤실 명칭 변경의 건 3. 전국기윤실간사회의 • 일시/장소 : 11월21일(월) 오후 12시 20분/ 서울 • 지역별 현황파악, 대표자회의 검토, 협력방안 논의	4,169,490원

2016년도 재정보고

재무상태표

제26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25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체명: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단위 : 원)

과목	26기(2016년)			015년)
	금	액	금	액
I. 자산				
1. 유 동 자산		91,374,547		100,333,994
가.당좌자산		91,374,547		100,333,994
(1)현금		1,153,030		891,530
(2)예금		90,071,817		99,193,194
(3)선 급금		0		30,000
(4)선납세금		149,700		219,270
2. 비유 동 자산		47,890,500		47,834,457
가.사용제약자산		45,300,000		45,300,000
(1)기본금적립금		1 45,000,000		45,000,000
(2)기타보증금		2 300,000		300,000
나.유형자산		2,590,500		2,534,457
(1)차량운반구	6,000,000		6,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999,000	1,000	5,999,000	1,000
(2)비품	25,671,005		29,702,200	
감가상각누계액	23,081,505	2,589,500	27,168,743	2,533,457
자산 총계		139,265,047		148,168,451
표. 부채				
1. 유 동부 채		18,031,281		18,010,206
(1)미지급금		3 934,700		1,027,160
(2)예수금		4 17,096,581		16,983,046
2. 비유 동 부채		1,833,834		1,493,359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1,833,834		1,493,359
부채 총계		19,865,115		19,503,565
皿 순자산				
1. 기본금(영구적제약)		45,000,000		45,000,000
(1)설립기 본금		45,000,000		45,000,000
2. 잉여금(무제약)		74,399,932		83,664,886
(1)전기이월운영차액	83,664,886		111,373,164	
(2)당기운영차액	(9,264,965)		(27,708,278)	
순자산 총계		119,399,932		128,664,886
부채와 순자산 총계		139,265,047		148,168,451

- ※ 본 재무상태표는 가립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감사보고서 원본은 등록데스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총회 이후에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법인설립기본금
- ② 복사기 임차보증금
- ③ 전월 4대보험료 법인분
- ④ 예수금 내역 : 전월 4대보험료 개인분

활동정지 지역기윤실 후원금 보유 (광주 : 2,744,560원 춘천 13,071,426원)

운 영 성 과 표 26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5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체명· (사) 기독교유리식처운동

(단위 · 워)

지정과목 2016년 2015년 제정과목 2016년 1. 사업수익 303,093,670 298,635,920 I. 사업비용② 314,067,083 326,569,298 I. 회비 143,267,000 142,366,700 1. 인건비 166,333,637 158,945,555 (1)회원회비 105,836,000 109,360,700 (1)급여및상여 138,753,579 133,094,000 (3)지역회비 26,141,000 27,556,000 (3)퇴직급여 12,150,658 10,123,736,200 (4)4대보험 11,129,370 9,727,820 (1)교회기관후원금 94,940,000 93,860,000 (4)4대보험 11,129,370 9,727,820 (1)교회기관후원금 94,940,000 93,860,000 (4)4대보험 11,129,370 9,727,820 (1)교회기관후원금 34,000,000 55,990,000 (1)통신비 1,515,170 1,700,120 (2)지원후원금 18,03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2)지원후원금 18,03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4)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구료 10,807,139 4,692,844 (2)5록되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자료 2,0771,400 20,520,000 (2)교육목착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감작의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31,9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31,9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3)유지보수비 98,848,996 122,525,089 7사업회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000 (3)오라비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290,520 3,970,000 (3)오라비 4,753,420 (3)오라비 5,526,604 (4)강사비 5,000,000 (6)지급수료 (5)오랜비 4,753,420 (5)28,420 (4)강사비 5,000,000 5,000,000 (7)합력사업비 4,757,000 7,425,420 (4)강사비 1,2114,850 9,902,330 (7)원부사업비 4,757,000 7,315,420 (1)오삭사업비 4,757,000 7,425,420 (1)오삭사업비 4,757,000 7,325,420 (1)오삭	단체명: (사) 기독교윤	믜실천 운동				(단위 : 원)
I. 사업수익① 303,093,670 298,635,920 I. 사업비용② 314,067,083 326,569,298 1. 회비 143,267,000 142,366,700 1. 인건비 166,333,637 158,945,555 (1) 회원회비 105,836,000 109,360,700 (1) 급여및상여 138,753,759 133,094,000 (2) 이사회비 11,290,000 5,450,000 (2) 협동간사사례비 4,300,030 6,000,000 (3) 지역회비 26,141,000 27,556,000 (3) 퇴직급여 12,150,658 10,123,735 2 일반후원금 94,940,000 93,860,000 (4) 4대보형 11,129,370 9,727,820 (1) 목적후원금 34,940,000 93,860,000 2. 사무관리비 48,884,450 45,098,654 3. 특정후원금 52,030,000 55,990,000 (1) 통신비 1,515,170 1,700,120 (1) 목本후원금 34,000,000 55,990,000 (2) 교통비 809,740 993,940 4. 사업수입 12,856,670 6,419,220 (4) 사무안네 270,800 307,000 (1) 사업수입 1,535,883 1,753,584 (8) 수도광열비 2,074,689 1,808,801 (1) 이자수입				_		
1. 회비	계정과목	2016년	2015년	계정과목	2016년	2015년
(1)회원회비 105,836,000 109,360,700 (1)급여및상여 138,753,579 133,094,000 (2)이사회비 11,290,000 5,450,000 (2)협동간사사례비 4,300,030 6,000,000 (3)지역회비 26,141,000 27,556,000 (3)퇴직급여 12,150,658 10,123,735 2 일반후원금 94,940,000 93,860,000 (4)4대보험 11,129,370 45,098,654 3 특정후원금 52,030,000 55,990,000 (1)통신비 1,515,170 1,700,120 (1)목적후원금 34,000,000 50,000,000 (2)교통비 918,800 716,200 (2)지원후원금 18,03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4)사업후원금 18,03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上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시급수수료 10,807,3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IL 사업외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암차료 20,771,400 20,520,000 (2)교통보리 34,043,359 (9)지급암차료 20,771,400 20,520,000 (2)교통보리基환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717,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839 (15)감가상각비 930,107 743,839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기사업행사비(4) 54,666,416 78,194,129 (1)화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안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지전에비 4,753,420 (5)진행비 4,753,420 (5)00,000 (7)전력사업비 4,757,000 7,425,420 (4)라시지 6,971,030 7,311,860	I. 사업수익 ①	303,093,670	298,635,920	I. 사업비용(2)	314,067,083	326,569,298
(2)이사회비 11,290,000 5,450,000 (2)협동간사사례비 4,300,030 6,000,000 (3)지역회비 26,141,000 27,556,000 (3)퇴직급여 12,150,658 10,123,735 2 일반후원금 94,940,000 93,860,000 (4)4대보험 11,129,370 9,727,820 (1)교회기관후원금 94,940,000 93,860,000 (2)교통비 48,884,450 45,098,654 3. 특정후원금 52,030,000 55,990,000 (1)통신비 1,515,170 1,700,120 (1)목적후원금 34,000,000 50,000,000 (2)교통비 809,740 993,940 4. 사업수입 12,856,670 6,419,220 (4)사무인쇄비 270,800 307,000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692,844 (3)자료판매비 3,162,88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교육목점사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4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7,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6)직작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호식시 (1)소식지 6,971,030 7,311,860	1. 회비	143,267,000	142,366,700	1. 인건비	166,333,637	158,945,555
(3)지역회비 26,141,000 27,556,000 (3)퇴직급여 12,150,658 10,123,735 2 일반후원금 94,940,000 93,860,000 (4)4대보험 11,129,370 9,727,820 (1)교회기만후원금 94,940,000 93,860,000 (2 사무관리비 48,884,450 45,098,654 3. 특정후원금 52,030,000 55,090,000 (1)통신비 1,515,170 1,700,120 (1)목적후원금 34,000,000 50,000,000 (2)교통비 918,800 716,200 (2)지원후원금 18,03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4. 사업수입 12,856,670 6,419,220 (4)사무인쇄비 270,800 307,000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IL 사업외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교통직사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3)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5)과당사리 930,107 743,089 IN (15)과당사리 930,107 743,089 IN (15)과당사리 930,107 743,089 IN (15)과당사리 98,848,996 I22,525,089 IN (15)과당사리 930,107 743,089 IN (15)과당사리 2,290,520 (10)과임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원쇄비 2,290,520 (3)9,000 (4)강사비 5,000,000 5,000,000 (5)진행바비 4,753,420 5,816,614 (6)목작사업비 4,757,000 7,425,420 (4)장사비 4,757,000 7,425,420 (4)장사리 (6,971,030 7,311,860	(1)회원회비	105,836,000	109,360,700	(1)급여및상여	138,753,579	133,094,000
2. 일반후원금94,940,00093,860,000(4)4대보험11,129,3709,727,820(1)교회기만후원금94,940,00093,860,0002. 사무관리비48,884,45045,098,6543. 특정후원금52,030,00055,990,000(1)통신비1,515,1701,700,120(2)지원후원금18,030,0005,990,000(3)소모품비809,740993,9404. 사업수입12,856,6706,419,220(4)사무인쇄비270,800307,000(1)사업후원금8,563,8702,975,720(5)보험료420,440511,240(2)등록비1,130,0001,760,000(6)지급수수료10,807,1394,692,844(3)자료판매비3,162,8001,683,500(7)제세공과금160,520165,09011. 사업외수익1,833,8341,493,359(9)지급암차료20,771,40020,520,000(2)골라목착산업1,493,359130,952(10)발송비562,660774,050(3)잡수입238,690129,273(11)복리후생비3,188,1752,206,530(3)잡수입238,690129,273(11)복리후생비3,404,8003,311,900(14)교육훈련비2,458,1106,171,350(15)감가상각비930,107743,089가사업행사비④54,666,41678,194,129(1)회의비2,127,1203,266,045(2)홍보비1,738,3561,615,150(3)안세비2,290,5203,970,900(4)강사비5,000,0005,000,000(5)진행비4,753,4205,816,614(6)목자산법비4,757,0007,425,420나.홍보사업비12,114,8509,902,330(1)소식지6,971,0307,311,860 <td>() ! ! ! !</td> <td>11,290,000</td> <td>5,450,000</td> <td>(2)협동간사사례비</td> <td>4,300,030</td> <td>6,000,000</td>	() ! ! ! !	11,290,000	5,450,000	(2)협동간사사례비	4,300,030	6,000,000
(1)교회기만후원금 94,940,000 93,860,000 2 사무관리비 48,884,450 45,098,6554 3. 특정후원금 52,030,000 55,990,000 (1)통신비 1,515,170 1,700,120 (1)목적후원금 34,00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4 사업수입 12,856,670 6,419,220 (4)사무인쇄비 270,800 307,000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동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1 ,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소라음환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1 ,71,100 (14)소라음환입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1 ,71,10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15)감가상각비 2,290,520 3,970,900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 ! !	12,150,658	10,123,735
3. 특정후원금 52,030,000 55,990,000 (1)통신비 1,515,170 1,700,120 (1)목적후원금 34,000,000 50,000,000 (2)교통비 918,800 716,200 (2)지원후원금 18,03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4. 사업수입 12,856,670 6,419,220 (4)사무인쇄비 270,800 307,000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1. 사업의수익 3,565,883 1,753,584 (8)수도광일비 2,074,689 1,808,80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3)합사업비 2,458,110 6,171,350 (13)유지사업비 3,404,800 3,311,900 (1)화학사업비 9,848,996 122,525,						9,727,820
(1)목적후원금 34,000,000 50,000,000 (2)교통비 918,800 716,200 (2)지원후원금 18,03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4. 사업수입 12,856,670 6,419,220 (4)사무인쇄비 270,800 307,000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IL 사업외수익 3,565,883 1,753,584 (8)수도광열비 2,074,689 1,808,80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소합됨환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IN 사업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IN 사업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 · · · ·				
(2)지원후원금 18,030,000 5,990,000 (3)소모품비 809,740 993,940 4. 사업수입 12,856,670 6,419,220 (4)사무인쇄비 270,800 307,000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II. 사업외수익 3,565,883 1,753,584 (8)수도광열비 2,074,689 1,808,80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골라급환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기・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1)호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4. 사업수입 12,856,670 6,419,220 (4)사무인쇄비 270,800 307,000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IL 사업외수익 3,565,883 1,753,584 (8)수도광열비 2,074,689 1,808,80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소라임취임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IC,13가삼각비 930,107 743,089 IC,13라이나(4)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 '	•	
(1)사업후원금 8,563,870 2,975,720 (5)보험료 420,440 511,240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II. 사업외수익 3,565,883 1,753,584 (8)수도광열비 2,074,689 1,808,80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고유목점사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2)등록비 1,130,000 1,760,000 (6)지급수수료 10,807,139 4,692,844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II. 사업외수익 3,565,883 1,753,584 (8)수도광열비 2,074,689 1,808,80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고유목적사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3)자료판매비 3,162,800 1,683,500 (7)제세공과금 160,520 165,090 II. 사업외수익 3,565,883 1,753,584 (8)수도광열비 2,074,689 1,808,80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고유목적사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 '	•	
표사업외수익 3,565,883 1,753,584 (8)수도광열비 2,074,689 1,808,801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골유목적사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 ,		
(1)이자수익 1,833,834 1,493,359 (9)지급임차료 20,771,400 20,520,000 (2)고유목적사업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2) 공유목적사업 (3) 잡수입 238,690 129,273 (11) 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 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 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4)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1,833,834	1,493,359	(9)시급임자료	20,771,400	20,520,000
(12)활동비 591,900 476,50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1,493,359	130,952	(10)발송비	562,660	774,05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3)잡수입	238,690	129,273	(11)복리후생비	3,188,175	2,206,530
(14)교육훈련비 2,458,110 6,171,35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12)활 동 비	591,900	476,50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13)유지보수비	3,404,800	3,311,900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14)교 육 훈련비	2,458,110	6,171,350
가.사업행사비④ 54,666,416 78,194,12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15)감가상각비	930,107	743,089
(1)회의비 2,127,120 3,266,045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3. 사업비	98,848,996	122,525,089
(2)홍보비 1,738,356 1,615,150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가.사업행사비4	54,666,416	78,194,129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1)회의비	2,127,120	3,266,045
(3)인쇄비 2,290,520 3,970,90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2)홍보비	1,738,356	1,615,150
(4)강사비 5,000,000 6,100,0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3)인쇄비	2,290,520	3,970,900
(5)진행비 4,753,420 5,816,614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6)목적사업비 34,000,000 50,000,00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7)협력사업비 4,757,000 7,425,420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 '		
나.홍보사업비 12,114,850 9,902,330 (1)소식지 6,971,030 7,311,860						
(1)소식지 6,971,030 7,311,860						
(2) a E S - 1				(2)웹운영비	658,500	563,870
(3)도서자료제작비 3,360,000					3,360,000	
(4)홍보물제작비 1,125,320 2,026,600					1 1	2,026,600

2016년도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2016년	2015년	계정과목	2016년	2015년
			다.지역사업비	32,067,730	34,428,630
			(1)지역간사지원금	3,414,820	2,703,180
			(2)지역행사비	2,511,870	4,169,490
			(3)지역회비전달금	26,141,040	27,555,960
			표. 사업외비용	1,857,424	1,528,484
			(1)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	21,895
			(2)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	1,833,834	1,493,359
			(3)잡손실	13,590	13,230
수입 총계	306,659,553	300,389,504	지출 총계	315,924,507	328,097,782
당기 순자산의 증(감)			당기 순자산의 증(감)	(9,264,954)	(27,708,278)

1. 운영성과표 부가 설명

① 2016년 사업수익 예산은 3억4천6백만원이었으며, 결산은 3억3백여만원(303,093,670원)으로 예산 대비 87.60% 달성했습니다. 각 계정별 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과목	2016 예산	2016 결산		기타
세형피크	금액	금액	달성률(%)	71-1
I. 사업수익	346,000,000	303,093,670	87.60%	
1. 회비(개인)	156,000,000	143,267,000	91.84%	
(1)회원회비	120,000,000	105,836,000	88.20%	개인 692명(2015년 716명)
(2)이사회비	8,000,000	11,290,000	141.13%	계단 092명(2013년 /10명)
(3)지역회비	28,000,000	26,141,000	93.36%	개인 247명(2015년 238명)
2. 일반후원금(법인)	103,000,000	94,940,000	92.17%	기관 63개(2015년 62개)
3. 특정후원금	75,000,000	52,030,000	69.37%	
(1)목적후원금	50,000,000	34,000,000	68.00%	좋은교회상
(2)지원후원금	25,000,000	18,030,000	72.12%	불편레시피 지원금 등
4. 사업수입	12,000,000	12,856,670	107.14%	분담금, 등록비 등

② 2016년 사업비용 예산은 3억4천6백만원이었으며, 결산은 3억1천여만원(314,080,673원)으로 예산 대비 90,77% 달성했습니다. 계정그룹별 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과목	2016 예산	2016 결산		기타
게o피크	금액	금액	달성률(%)	71 - 1
표 사업비용	346,000,000	314,080,673	90.77%	
1. 인건비	166,000,000	166,333,637	100.20%	
2. 사무관리비	43,500,000	48,898,040	112.41%	
3. 사업비	136,500,000	98,848,996	72.42%	

③ 2016년 당기 순자산은 9,264,954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유동자산은 91,224,847원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수해지원 모금액 7백5십 여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에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 사업별 지출 내역 부가 설명

① 사업행사비 5천4백여만원(54,666,416원)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단위 !	및 사업명	사업행사비
정직윤리	자발적불편 운동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71,510
운동본부	기독교윤리실천학교	제2회 "기독교윤리, 정치가에게 묻다" 제3회 "인공지능시대의 기독교윤리"	1,785,810
	교회의 사회적책임 운동	부교역자동역서약서모범안 언론발표회 종교인성범죄토론회	1,619,200
교회신뢰	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연구위원회의	245,600
운동본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협력)	"교회세습, 하지맙시다" 발간기념 북토크	4,000
	교회재정건강성운동(협력)	교회재정세미나/ 목회자소득세신고어렵지않아요 개정판	2,011,000
사회정치	기윤실 포럼	한국경제양극화 진단과 대안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갈등현상 양극화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2,383,470
윤리운동	공명선거운동	Talk, Pray, Vote 캠페인	895,000
	현안대응	김영란법좌담회, 여성혐오좌담회	1,539,056
자치기구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윤리 단행본 <목회자윤리강령,28> 출간기념 기자간담회 및 세미나	1,187,960
	사회복지위원회	2016년 좋은교회상	34,000,000
연대운동	공동사업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 / 제주평화순례	452,000
건네판중	정기분담금	대한민국교육봉사단 / 성서한국 / 핵그연 낙태반대운동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290,000
	2016년 회원총회		3,505,410
사무처	회원홍보운동	회원예우/ 회원가입이벤트/ 회원인터뷰/ 홍보부스운영/ 홍보물 제작 등	915,180
	비전컨설팅	-	160,560 (6,000,000)
	각종 회의	내부회의(이사회/상집) / 간사워크샵 등	1,600,660
	54,666,416		

2016년 후원자 명단 및

※ 2016년 기윤실에 1회 이상 후원해 주신 개인 및 단체 명단입니다.(서울 기준) 감사합니다.

1. 개인(692명)

강대현 강명길 강민봉 강범일 강병관 강석우 강석창 강승우 강승철 강영수 강영안 강윤주 강은경 강은정 강일구 강정규 강진호 강 철원 강춘근 강춘례 강현주A 강현주B 강호인 강흥구 강희철 고기숙 고승표 고은영 고정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곽종철 구예리 권 명희 권민규 권아현 권오재 권용태 권장희 권태현 권혜진 금은미 기세충 기웅서 기윤도 김경래 김경미 김경숙 김경천 김경호 김고 운 김광환 김규성 김근원 김기섭 김기협 김기호 김달수 김대만 김대인 김대준 김대중 김동석 김동조 김두희 김령희 김말순 김명찬 김문돌 김미령 김미숙 김미혜 김민숙 김민아 김병식 김병일 김삼숙 김상범 김상윤 김상은 김상인 김상한 김선욱 김선희 김성경 김 성근 김성심 김성열 김성천 김성태 김성현 김성호 김세진 김수정 김승희 김신곤 김신욱 김애실 김연기 김연수 김영모 김영봉 김영 식 김영철A 김영철B 김예운 김요열 김용군 김용미 김원섭 김윤서 김윤수 김은수A 김은수B 김은영 김은이 김은지 김이수 김인빈 김 인선 김인숙 김일수 김재균 김재원 김재홍 김재환 김정미 김정섭 김정욱 김정원 김정현 김정훈 김종필 김종호 김주현 김주현 김준 영 김준완 김준희 김지민 김지태 김진규 김진석 김진표 김철성 김철준 김춘곤 김충환 김태환 김태훈A 김태훈 김학동 김학빈 김한나 김한성 김현아 김현태 김현희 김형일 김형중 김형택 김혜경A 김혜경B 김혜경C 김혜창 김홍섭 김홍연 김홍주 김홍환 김효민 김효준 김흥식 김희경 김희숙 김희정 나영식 나종주 나창효 나현집 남경자 남궁설 남대일 남영란 남재환 남제현 남준일 남태일 남 혁권 노경오 노광섭 노대웅 노성순 노승아 도낙주 도종수 두재영 리창호 류기성 류선민 류인복 류종우 명호중 문경환 문규 문덕암 문석윤 문소영 문정옥 문현미 문현주 박경순 박경춘 박경희 박기출 박득훈 박명곤 박명배 박무웅 박미정 박민선 박복애 박봉순 박 상규 박상돈 박상욱 박상일 박상호 박상홍 박서현 박석호 박선영 박성령 박성진 박세진 박수경 박수정 박영범 박원주 박윤배 박윤 정 박은미 박은지 박은하 박인애 박일화 박재장 박재한 박정민 박정우 박정임 박제민 박제우 박종구 박종운 박종원 박종일 박종진 박종환 박주현 박지연 박진숙 박진영 박진욱 박진희 박찬기 박찬수 박창균 박철 박철원 박태순 박태영 박택규 박판근 박한옥 박혜 경 박혜민 박혜윤 박호용 박홍래 박환승 방은영 배기홍 배복희 배재수 배정주 배정호 배종석 배진성 배진화 백경원 백경호 백명희 백은희 백인남 백지열 백현주 범학식 변현정 변희중 서동진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서임선 서종오 서효정 설정원 성근해 성상현 성 우경 소은중 손경화 손기식 손병철 손봉호 손상문 손영걸 손영일 손용기 손은숙 손은순 손은정 손현화 손회철 송구영 송명숙 송미 옥 송병문 송성헌 송시섭 송인수 송종영 송준인 송철학 송태현 송택호 송형록 신경희 신국원 신대희 신동립 신명호 신상린 신수현 신은정A 신은정B 신전수 신창조 신호균 신효영 신희선 심윤아 안병직 안선옥 안신길 안연희 안은상 안은애 안정은 안지현 안춘명 안태주 양경림 양낙흥 양영두 양정석 양지혜 엄용환 엄현식 여신은 오기맹 오동근 오동춘 오미영 오상덕 오성만 오세란 오수현 오 은석 오진선 오창섭 오혁진 옥성일 우창록 우현기 원연희 원영대 원응삼 원종민 위국명 유건호 유동원 유미래 유성오 유영신 유영 업 유영준 유원욱 유재균 유정윤 유창수 유해신 유현숙 유혜영 유혜원 유혜원 유희경 윤니래 윤덕룡 윤두선 윤명은 윤미정 윤민영 윤성우 윤양숙 윤영관 윤영식 윤영휘 윤정숙 윤지나 윤태호 윤해균 윤혁경 이경진 이경천 이고은 이국운 이근무 이금성 이금아 이 기선 이기웅 이길승 이남경 이도홍 이동철 이동혁 이만동 이만열 이만휘 이명자 이문규 이미연 이방욱 이범우 이병삼 이병환 이삼 희 이상규

이상민 이상복 이상주 이상진 이상철 이석형 이석희 이성곤 이성준 이성진 이세령 이수경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슬이 이승준 이 영광 이영민 이영분 이예성 이용아 이용처 이용훈A 이용훈B 이워근 이워애 이워영A 이워영B 이워우 이월숙 이윤정 이은성 이은자 이은현 이익용 이익영 이익택 이장규 이장원 이장형 이재문 이재민 이재윤 이재헌 이정민 이정은 이정행 이정훈 이정희 이종규 이 종설 이종숙 이주일 이주화 이창미 이처화 이철진 이충학 이태희 이필성 이해영 이혁재 이혀기 이혀숙 이혀주 이혀호 이형조 이호 식 이화영 이희석 이희열 이희현 인훈 임미정 임성빈 임소희 임영제 임일택 임종록 임지웅 임태규 임하라 임현경 장규선 장기화 장 서은 장영상 장영순 장옥선 장윤희 장준혁 장지인 장창수 장혜경 전갑용 전광운 전병선 전선영 전장덕 전재중 전종갑 전희숙 정경 애 정계영 정규장 정규영 정동근 정명숙 정명혜 정문희 정미나 정민경 정병선 정병오 정상훈 정선우 정성진 정세열 정수덕 정애리 정애주 정영미 정영호 정왕효 정유선 정유정 정유진 정윤호 정은창 정일용 정재훈 정중묵 정지연 정철도 정철성 정현철 정호연 정 화선 정화조 조경옥 조경철 조무성 조선미 조성극 조성돈 조성연 조영미 조용환 조우철 조우경 조인진 조인형 조정미 조제호 조종 호 조준호 조천권 조태례 조현영 조혜미 조흥식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지상섭 지연심 진미자 채홍석 최경구 최경석 최경숙 최광사 최근영 최병제 최삼열 최삼욱최상태 최성수 최성숙 최영석 최영애 최영춘 최영춘 최영호 최우석 최웅권 최유선 최융 최인영 최정철 최종원 최준호 최지영 최지원 최지혜 최태연 최해홍 최현지 최희영 추민수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히만종 히숙희 하용정 하재웅 하 현주 한귀목 한기채 한병선 한상호 한석환 한성준 한신영 한유식 한이수 한인철 한재량 한지연 한창희 한형열 한화영 허동혁 허영 진 허일구 현삼원 홍관수 홍대식 홍병환 홍선희 홍인기 홍인종 홍일선 홍정진 홍택주 황규민 황명화 황병일 황선영 황성결

2. 단체(63개 교회/기관)

㈜마임 ㈜소프트이천 100주년기념교회 경주교회 고양화평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 니엘새시대교회 대림교회 대주산업 대한기독간호사협회 덕수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서장로교회 동안교회 마산재건 교회 망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반월중앙교회 법무법인한기연 부천예인교회 부천평안교회 분당샘물교 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산울교회 서교동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염교회 서울 남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진교회 수원중앙침 례교회 소망교회 소망글로벌 신반포교회 양무리중앙교회 언약교회 예인법률사무소 오륜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 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뜻새들녘교회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A 지구 촌교회B 지비젼인터내셔널 창동염광교회 청량교회 향상교회

3. 기타통계

• 운영성과표 요약

단위: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	282,520,744	309,389,130	349,218,485	300,389,504	306,659,553
지출	284,162,678	301,477,486	366,249,988	328,097,782	315,924,507
순자산의 증감	-1,641,934	7,911,644	-17,031,503	-27,708,278	-9,264,954

• 재무상태표 요약

단위: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산총계	168,913,337	191,063,039	175,300,342	148,168,451	139,265,047
유동자산	116,044,167	139,763,090	126,861,485	100,333,994	91,374,547
고정자산	52,869,170	51,299,949	48,438,857	47,834,457	47,890,500
부채총계	3,420,314	17,658,372	18,927,178	19,503,565	19,865,115
유동부채	2,086,155	16,488,985	18,796,226	18,010,206	18,031,281
고정부채	1,334,159	1,169,387	130,952	1,493,359	1,833,834
순자산총계	165,493,023	173,404,667	156,373,164	128,664,886	119,399,932
기본금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잉여금	120,493,023	128,404,667	111,373,164	83,664,886	74,399,932

• 개인후원자/후원금 변화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기후원자	711명(94%)	699명(92%)	665명(92%)	680명(94%)	660명(95%)
비정기후원자	41명(6%)	60명(8%)	59명(8%)	36명(6%)	32명(5%)
합	752명	759명	724명	716명	692명
신규후원자	57명	60명	47명	48명	35명
후원금	112,310,230원	118,882,900원	117,825,000원	114,810,700원	117,126,000원

✔ 정기후원자는 CMS후원자와와 계좌이체로 연 7회 이상 납입한 후원자를 의미하며, 비정기후원자는 계좌이체로 연 6회 이하 납입한 후원자입니다.

• 후원 교회,기관/후원금 변화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회	51개(88%)	51개(89.5%)	48개(85%)	53개(85%)	55개(88%)
기관	7개(12%)	6개(10.5%)	8개(15%)	9개(15%)	8개(12%)
합	58개	57개	56개	62개	63개
후원금	108,050,000원	107,450,010원	93,500,000원	93,860,000원	94,940,000원

• 관심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뉴스레터 회원	통계없음	3,829명	3,656명	4,266명	4,343명	4,229명
페이스북 친구	통계없음	9,100명	9,580명	10,003명	10,412명	10,523명

✔ 뉴스레터 회원은 후원회원과 기자를 제외한 통계입니다. 페이스북 친구에는 후원회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회 귀중

2017년 1월 13일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첩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 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 과표 및 수지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법인의 정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 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 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 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 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2016년도 감사보고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16년 12 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을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2 밀브리지홀 4층

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 박개성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7년 01월 1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청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 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기윤실은 재정투명성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 주석

- ① 재무제표 작성 기준
 - 법인은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② 사용제약자산 사단법인 기본재산으로 기본금적립금 45,000,000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③ 기타참고사항
 - 본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기독교윤리실천 운동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내부 업무감사보고서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6년 내부감사보고서

저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의 감사로서 기윤실 정관 제23조 등 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2016 회계연도의 기윤실 회계,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감사를 위해 기윤실 사무실을 방 문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간사들을 면담하였습니다.

저는 기윤실의 회계, 업무, 운영 등이 정관, 기타 규정 등에 부합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내부감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드립니다.

1. 이사회 및 상임집행위원회 의사정족수

- 2016년에는 이사회가 1회(2월 23일)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는 정관상의 의사정 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 2016년에는 상임집행위원회가 3회(7월 16일, 9월 23일, 11월 26일) 개최되었는 데, 제2차 회의(9월 23일) 및 제3차 회의(11월 26일)에는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하 였습니다. 제1차 회의(7월 16일)에는 상임집행위원의 과반수(6명)에 미달하는 5명 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그 회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 다. 위원의 의결권 위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생 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윤실 포럼

기윤실은 2017년까지 양극화해소운동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2015년 중 양극 화문제에 관하여 5회의 기윤실 포럼을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2015년에는 1회 만 기윤실 포럼을 열었습니다. 2016년에 나머지 4회의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는 데. 2016년 중에는 3회만 기윤실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3. 사무처 업무운영규칙 개정

관련법률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처 업무운영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사 무처 간사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사무처 업무운영규칙이 관련법률의 최근 개정사 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2016년 말에 개정되었습니다(2017. 1. 1. 시행).

4. 사무처 윤리규정 제정

201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기윤실 윤리규정의 보완 필요성(기윤실 직원 및 기윤실 전체에 대한 윤리규정의 제정, 실행)이 제기되어 상집위에서 윤리규정의 제정을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2016년 말에 사무처 윤리규정(7개 조항)이 제정되었습니다 (2017. 1. 중순경 시행). 다만, 기윤실 전체에 대한 윤리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 았습니다.

5. 정관 개정

2016년 3월 15일 회원총회에서는 2005년 이후 개정된 정관에 관해 일괄적으로 주무관청(서울시)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관개정안 중 '해산 및 정관변경시 의결요건'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개정안을 반려하였다고 합니다.1) 아울러 서울시는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최종 승인받은 2005년 정관 당 시의 정관변경요건(대의원총회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정관변 경결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7년 회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정관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17년 2월 8일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감사 이상민(변호사)

¹⁾ 정관개정안에서는 해산 및 정관개정의 경우 '출석인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라고 규정하였는 데, 서울시는 '출석인원'을 '재적인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함.

정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가. 기윤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과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1991년11월11일) 매년 총회를 개최하면 정관변경을 포함한 총회결과를 종무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나. 그러다가 2001년부터 등록은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에 되어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은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총회 보고 절차 또한 2005년부터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은 계속 주무 관청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오랜 기간 누락되어 왔습니다.
- 다. 기윤실은 1991년 정관제정 이후 9차례에 걸쳐 정관개정(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을 했는데, 주무관청인 서울시 문화예술과 종무팀에 문의한 결과 등록된 정관이 2005년 정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라. 2005년 이후 6차례의 정관변경 신고가 누락된 것인데, 서울시 종무팀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이번 총회에서 2005년 정관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정관변경 내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마. 2016년 총회 의결사항을 담아 정관개정안을 주무관청에서 등록하려 했으나, 주무관청에서 아래 두 가지 이유로 개정 정관을 반려했습니다.
 - ①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2005년 정관을 기준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해야 함.
 - → 2016년 총회는 2012년 정관을 기준으로 개최되었기에, 2005년 기준 찬성인원에 미치지 못함
 - ② 해산 및 정관변경 조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출석인원이 아닌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2. 2017년 개정 조항

- 2016년 총회에서 의결한 개정 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민법과 주무관청 권고사항에 따라 아래 조항을 추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 제 2조(소재지) 서울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관할구청 알 수 있도록 상세주소 표기)
- 제 13조(정족수) 자격을 갖춘 출석회원들로 성립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제 16조(임원의선출) ④항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임원정수의 1/5를 초과 할 수 없다.
- 제 37조(재산의관리)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교환, 담보 제공, 권리의 포기 및 기채 시에 는 주무관청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하고자 할 때에는 제 42조(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제 40조(해산)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 제 42조(정관의변경)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신.구 정관 대비표

		2017년 개정
2005년 정관(등록 정관)	2016년 정관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기독교윤 리실천운동(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이하 본회라 한 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 운동(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 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둔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u>서울특별시</u> 에 두 고, 필요한 곳에 지역 기윤실을 둘수 있다.	제2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 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연구, 출판, 교육 사업 ② 캠페인 ③ 활동모임의 조직 ④ 기타 본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	 ① 연구, 출판, 교육 사업 ② 캠페인 ③ 활동모임의 조직 ④ 기타 본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사명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취지와 행동지침에 찬동하여 입회 원서를 제출,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같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본회 제반 활동에의 참기권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정신을 실천할 의무 ② 본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따를 의무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행동지침을 실천할 의무 ② 본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따를 의무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서 탈퇴할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집행위 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 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 자에 대하 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 한 자에 대하여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1절 대의원 총회

제10조(구성)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 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부 임 원과 본부(서울 및 미조직 지역회원)및 지 부에서 회원 100명당 1명 기준으로 파송 하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1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 여 소집한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초에 이사장 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총회 구성원 3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 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2조(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제반 중요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 ⑧ 기타사항

제13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정관 제12 조 ②, ③항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 성으로서 결정한다.

② 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회의전 에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권 한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제척사유) 총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은 제척(除斥)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 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 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 한 사항.

제 3 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 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 집한다.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초에 이사장이 소 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 이사장은 의제와 일시와 장소를 1주 전에 공고 해야 한다.

제12조(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제반 중요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 ⑧ 기타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자격을 갖춘 **출석회원들** | 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출석회원** 3분 **하고** 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

재적회원 괴반수 의 출석으로 개최 재적회원

제14조(제척사유) 총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은 제척(除斥)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절 임원

제1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공동대표 7인 이내
- ③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이사장, 공동대표 포함)
- ④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다.

- ① 임원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선출하다.
-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시 이사

제2절 임원

제1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 ③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 과 같이 선출한다.

- ①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시 이사회에서 보선하다.
- ③ 임원을 선출한 후 지체 없이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④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 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 사간에 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이사회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로 구성한다.

②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 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20조(임 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 다.

-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 ② 연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의
- ③ 예산, 결산서의 심의
- ④ 재산 관리의 심의 의결
- ⑤ 운영규칙의 제정

회에서 보선한다.

- ③ 임원을 선출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 고한다
- ④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괴반수를 초괴해서는 안된다.
-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초괴할수 없다.** 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임원정수의 1/5를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장과 공동대표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3절 이사회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 한다.

②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 ② 연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의
- ③ 예산, 결산서의 심의
- ④ 재산 관리의 심의 의결
- ⑤ 운영규칙의 제정
- ⑥ 부이사장의 선출
- ⑦ 상임공동대표의 선출
- ⑧ 상임집행위원의 임면
- ⑨ 사무처(총)장과 운동본부장의 임면
-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의결
- 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21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 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단 인사업무에 관한한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회의 전에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공동대표 선출
- ⑦ 사무총장의 임면
- ⑧ 집행위원 및 집행위원장의 인준
- ⑨ 사무처장과 본부장의 임면
-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의결
- 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 제21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단 인사업무에 관한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회의 전에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을 감사하는 일
- ③ ①항 및 ②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대의원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 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위의 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장 또는 대의원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절 집행위원회

- 제24조(구성) 각 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 및 본부장, 사무처장, 자원활동모임의 대 표 지부의 대표 기타 약간 명 등으로 구성한다.
- 제25조(임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 의 의결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며 정 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유지 보급

제2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장 유고시, 또는 궐위 시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 사하는 일
- ③ ① 및 ②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위의 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 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절 공동대표

제24조(공동대표) ①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하고 당연직 상임집행위원이다.

제25조(상임공동대표) ① 공동대표 중 1인을 이 사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집행위원장을 겸직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상임집행위원을 추천하고 상임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공동대표, 운동본부장 사무처(총)장 외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7조(임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의 의결 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 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유지 보급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집행
- ③ 연간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의 의결
- ④ 각 운동본부와 사무처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임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⑤ 사무처와 각 운동본부, 자원활동모임 등 각 사업단위 간의 사업조정

제28조(상임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임 공동대표가 맡는다.

제6절 사무처

- 제29조(사무처) ① 본회의 제반업무를 실무적으 로 추진하고 네트워크화 된 본회 조직들의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보수에 관한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집행
- ③ 연간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의 의
- ④ 각 운동본부와 사무처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임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⑤ 사무처와 각 운동본부, 자원활동모임 등 각 네트워크 조직간의 사업조정
- ⑥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결정
- ⑦ 집행위원의 선임과 보선

제26조(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은 집행위 원회에서 선임하며, 집행위원회를 관장 하다

제5절 사무처

- 제27조(사무처) ① 본회의 제반업무를 실 무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화된 본회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 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③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사무처의 제반 활동을 주관하고 기윤실 네트워크 를 연결, 조정한다.
- ④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을 도와 사무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진행한다.

제6절 운동본부 및 기타기관

제28조(운동본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 한 운동본부를 둔다. 각 운동본부의 조직 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 으로 정한다.

제29조(동역 및 연대활동 조직) 본 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타 기관과 동역 및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부설기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산과 회계

- 제31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을 기본재산 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 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된 재산 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 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의 취득, 처 분 임대 교환 담보 제공, 권리의 포기 및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③ 사무처(총)장은 사무처의 제반 활동을 주관하 고, 전국기윤실협의회를 연결, 조정한다.
- ④ 사무국장은 사무처(총)장을 도와 사무처의 활 동을 실무적으로 진행한다.

제7절 운동본부 및 기타기관

제30조(운동본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한 운 동본부를 둔다. 각 운동본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동역 및 연대활동 조직)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타 기관과 동역 및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부 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절 전국기윤실협의회

- 제33조(지역기윤실) ① 본회는 사명에 공감하는 각 지역의 단체가 기윤실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지역기윤실을 둘 수 있다.
- ② 지역기윤실은 자체 정관에 의해 구성되며 조 직, 인선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연 1 회 자체 총회에 보고한다.
- ③ 본회와 지역기윤실은 서로의 사업에 적극 참 여할 책임이 있으며, 본회는 지역기윤실의 역량 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책임이 있다.
- ④ 지역기윤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지침은 "지역 기윤실 운영내규"를 준용한다.

제34조(명칭) 각 지역에 소재한 지역기윤실의 공 식명칭은 그 지역의 명칭을 붙여 "○○기윤실"이 라 하며, 본회와 지역기윤실을 통칭해 '전국기윤 실협의회'라 한다.

제35조(자격취득 및 상실, 징계 등) ① 전국기윤 실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소정 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총회에 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단, 활동정지 혹은 해산 후 활동재개를 희망하는 지역기윤실의 경 우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재개를 발의한 후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② 전국기윤실협으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 를 다하지 않는 지역기윤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활동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결의할 수 있다.

제 4 장 재산과 회계

기채시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사전 인기를 | 제36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

받아야한다.

②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 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비
- ② 후원금
- ③ 보조금
- ④ 기타수입금

제34조(세압세출 예산 및 감사)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 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②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2회 이상 한다.
- ③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 하다.

제 5 장 보칙

제35조(임기) 본 정관에 임기가 정해진 이 외의 모든 직책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으로 한다.

제3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 고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시 잔 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 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 는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 한다.

제38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의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 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익년도의 사 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출서류에는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다

제40조(규칙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정한다.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총 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임** 대, 교환, 담보 제공, 권리의 포기 및 기채시에 는 주무관청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회비
- ② 후원금
- ③ 보조금
- ④ 기타수입금

제39조(세입세출 예산 및 감사) ①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 도록 한다.

- ②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한다.
- ③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5 장 보칙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 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단 체에 기부한다.

제42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재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제43조(규칙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부칙

- 1. 본 정관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 다.
-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리스도 정 신에 입각하여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37조 기본재산 을 처분(매도, 증 여 교환 등) 하고 자 할 때에는 제 42조(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 쳐야한다)

재적 의결하 여 해산하고 신 고하여야한다.

부칙

- 1. 본 정관은 설립 등기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창립될 때 까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는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업무를 겸한다.
- 3.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리 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통상 규례에 준 한다.

제정:

1차 개정 : 1995년 3월

2차 개정 : 2000년 7월 17일 3차 개정 : 2005년 2월 21일 제정 : 1차 개정 : 1995년 3월 2차 개정 : 2000년 7월 17일 3차 개정 : 2005년 2월 21일 4차 개정 : 2006년 2월 20일 5차 개정 : 2007년 2월 26일 6차 개정 : 2009년 2월 25일 7차 개정 : 201년 3월 7일 9차 개정 : 201년 3월 7일 10차 개정 : 2016년 3월 15일 11차 개정 : 2017년 3월 7일

※ 개정안을 반영한 전체 정관내용은 본 자료집 58~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임 임원 명단

이사장 • 이사 • 감사 / 임기 : 2017년 3월~2021년 2월







백 종 국

정 병 오

한 정 화

황 병 구

-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시 오딧세이학교 교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한빛누리재단 본부장
- 기윤실 전 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기독경영연구원 이사

공동대표 [/] 임기: 2017년 3월~2021년 2월



배 종 석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기독경영연구원 이사

정 병 오

- 좋은교사운동 전 대표

정 현 구 • 서울시 오딧세이학교 교사 •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연임 임원 명단

	이름(소속)	임기
ol	문애란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2017년 3월~2021년 2월

사임 임원 명단

이름(소속)								
이사장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공동대표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감 사	이상민(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 홍정길 이사장과 임성빈 이사의 경우 이사직은 유지됩니다. 이상민 감사의 경우, 기윤실의 상임집행위원으 로 참여합니다.

신임 상임집행위원

	직함	성함	직장명	기타
1	상집위원	목광수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전 진주기윤실 회원
2	상집위원	박선영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교수	
3	상집위원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전 감사

※ 상임집행위원의 임면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임무입니다.

임원 명단 (임원 개선 후 : 임원 28명 - 이사27명, 감사1명)

			· 日已 20 6 1 127 6,	П. 11 0)	
	직함	성함	직장명	임기만료	기타
1	이사장	백종국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년2월	등기이사
2	상임 공동 대표	정병오	서울시 교육청 오딧세이학교	2021년2월	신임이사
3	공 <mark>동</mark> 대표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2020년2월	이사
4	공 동 대표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2018년2월	이사
5	이사	강석창	소망글로벌 회장	2019년2월	
6	이사	강영안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2020년2월	
7	이사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2018년2월	
8	이사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2018년2월	
9	이사	김홍섭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2020년2월	
10	이사	노영상	호남신대 총장	2019년2월	
11	이사	문애란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	2021년2월	
12	이사	박은조	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2019년2월	
13	이사	박제우	아이티엘 엔터프라이즈 부장	2020년2월	
14	이사	박종근	서울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2020년2월	
15	이사	방선기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2020년2월	등기이사
16	이사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020년2월	
17	이사	유해신	관악교회 담임목사	2018년2월	
18	이사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2021년2월	
19	이사	이의용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	2020년2월	등기이사
20	이사	전재중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2020년2월	등기이사
21	이사	정애주	홍성사 대표	2020년2월	
22	이사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2월	등기이사
23	이사	주광순	부산대 철학과 교수	2020년2월	
24	이사	진재혁	지구촌교회 담임목사	2019년2월	
25	이사	최상태	화평교회 담임목사	2019년2월	
26	이사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2021년2월	
26	이사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2020년2월	등기이사
27	감사	황병구	재단법인 한빛누리 본부장	2019년2월	

상임집행위원 명단

	직함	성함	직장명	기타
1	상임 공동 대표	정병오	서울시 교육청 오딧세이학교	이사
2	공 동 대표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사
3	공동대표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이사
4	상집위원	목광수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5	상집위원	박선영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교수	
6	상집위원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7	상집위원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8	상집위원	이장형	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	
9	상집위원	조성돈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10	상집위원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 2017년에는 기윤실 운동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참고하고자 자문위원회 구성을 예년과 달리 이사장, 이사, 사무총•처장을 역임하였던 분들을 구성하여 모시고자 준비중입니다. (단,현직임원 제외) 해당 위원에게 의 사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안

1. 기윤실 운동방향

- 기윤실은 정관 사명에 따라 총 3가지 운동영역 <정직윤리운동>, <교회신뢰운동>, <사회정치 윤리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총회 의결로, 기윤실 창립 3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양극화 해소를 넘 어 더불어함께"를 주제로 삼아 ▲자발적불편운동 ▲ 한국교회 부교역자처우개선과 동역서약서 모범안 발표 ▲ 양극화 과제모색을 위한 기윤실포럼 등의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 올해는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한 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19대 대선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운동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의 고통당한 이웃을 돌보는 부채해방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종교개혁500주년을 기념하며, 회개기도회를 비롯하여 종교개혁 정신의 참뜻을 헤아리 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 2017년 주요사업 선정 절차



<u>2017년도 사업개요</u>

	사업명	사업취지	예산				
정직 윤 운 본 부	★자발적 불편운동	① 나부터 작은 불편을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교회, 동네와 사회가 정직하고 투명해지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5,900,000원				
본부		① 월간 기독교세계 연재 등					
교 교 민 민 민 본 본	①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②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제공한다.						
	협력	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목회자 소득세 간소화 서비스 등 ② 종교개혁 500주년 회개기도회	2,720,000원 3,000,000원				
사회 저지리 당부 본부	①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기독교 내 일부세력의 그릇된 정치개 입을 견제한다. ② 공명선거운동에 앞장섰던 기윤실이 공정한 선거가 이뤄 지는데 힘을 보탠다.						
본부	★부채해방 프로젝트	 ①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고통당한 이웃으로서 채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지원방안 모색한다 ② 교회/성도를 위한 양극화 해소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4,000,000원				
	자치기구	① 사회복지위원회 : 2017년 좋은교회상 ② 기독교윤리연구소30주년 연구프로젝트 ③ 교사모임	34,000,000원 1,100,000원 -				
	연대운동	③ 공동사업 : 종교개혁500주년연합기도회, 절기연합예배, 세월호참사기독인모임 등② 정기분담금 : 성서한국 등	300,000원 370,000원				
	사무처	① 회원총회 ② 회원홍보운동 ③ 이사회/상임집행위원회/전국기윤실 등 ④ 30주년 기념 (비전컨설팅, 자료집, 기념식 등) ⑤ 이슈대응운동	13,410,000원				
		사업 행사비	85,000,000원				

※ ★표시가 되어있는 사업은 세부기획안으로 보고하였습니다.

<u>2017년도 사업일정</u>

	사업명	3	4	5	6	7	8	9	10	11	12
정직윤리 운동본부	교회와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0	•	ə	3	9	•	3	0	0	0
교회신뢰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0	•								
운동본부	[협력]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					0	0	
사회정치	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운동	0	0	0							
윤리운동본부	부채해방프로젝트				၁	ə	ə	ə	ə	•	•
자치기구	사회복지위원회					•	ə	•	•	0	
MAZII	기독교윤리연구소	0	0	9	3			9	0	0	
	회원홍보운동		•	•	•	•	•	•	•	0	0
사무처	창립30주년기념운동		•	•	•			•	•	ə	0
	전국기윤실협의회	0		>	•				•		ə

※ 2016년 회원간담회 주요결과 (2016.11.15)



-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할 것인가, 교회들과 함께 운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 기윤실의 핵심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운동들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 기윤실 운동에 교회가 호응하기 위해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 기윤실 하면 딱 떠오르는 핵심운동이 필요하다.
- 전매제한, 대출한도제한, 전세보증보험, 보증금•월세전환비율 등 필요한 제도가 많고 많은 기독교 임대인들이 참여한다면 좋은 운동이 되겠다.
-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는 불공정한 것이다.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 기윤실은 친서민, 비정규직, 노조 등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지금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연결 이 될 것 같다.

※ 2016년 신규사역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결과요약 (2017.01.02~01.13)

- 1) 기윤실 운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보수와 진보의 중간에서 성경적 바탕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건강하게 표출 하는 운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독교 시민단체로서 좀 더 공격적이고 행동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범죄 등 사회법을 어긴 목회자들이 절대로 다시 목회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사 표현 및 성명서, 행동 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회원들을 좀 더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미세먼지, 핵, 지진 등 '환경'관련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선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윤실 조직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신뢰할만한 가장 운동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함.
- 홍보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사회가 혼탁해지는 것을 비판하고 정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제시
- 사회 전반의 공의와 경제윤리가 회복되도록 활동적인 사역을 기대합니다. 개인 윤리를 넘어선 사회 윤리 확장에 힘써 주십시오
- 실천력이 약 한 것 같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계획단계부터 투명한 검증작업이 필요 하다
- 작고 건강한 교회들과의 network 확장을 통해 교회 후원과 협력 사역을 늘려서, 기존의 성장지 향형 보수 교회에 대응되는 새로운 교회 회복운동의 연대에 함께하는 것이 어떨지.

1.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 교회와 더불어 덜 불편하며 더 행복한 자발적 불편운동

취지

- 1. 나부터 작은 불편을 실천함으로써 가정, 교회, 사회가 정직하고 투명해지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하다.
- 2.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교회의 참여를 유도한다.

내용

- 1.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
 - ① 후원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단위 자발적불편운동 진행하고 추가 동참교회를 모집
 - ② 월별 주제 선정하여 주제에 맞는 교회·개인의 실천 방안 제공

기간	주제	기간	주제
3.4월	아껴쓰는 그리스도인	9·10월	정직한 그리스도인
5.6월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	11·12월	빚진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인
7.8월	창조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		

- 2. 기독교세계 연재
 -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공식 월간지 '기독교세계'에 자발적불편운동 소개 글을 기고
 - ② 해당월의 기념일 교회력 절기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불편운동 아이템을 선정
- 3.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 ① 자발적불편운동 동참교회에 보급 및 할인 판매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획												
홍보												
캠페인					•	•		•	•	•	•	
기독교세계연재	•	•	•		•	•		•	•	•	•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59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50만원	5회×10만원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250만원	웹자보 등 홍보물(5회)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250만원	배포자료 등(5회)
강사비(강의비,원고비 등)	0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40만원	간식비 등

열매(기대효과)

- 1. 30개 교회의 자발적불편운동 동참을 유도한다.
- 2.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2쇄를 완판한다.
- 3. 참가자와 교회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내년도 자발적 불편운동 실천과제 제정한다.

2.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3년 주기 조사

취지

- 1. 2013년 조사 이후 다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 2. 2015년 인구센서스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제공한다.

내용

- 1.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①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문항을 기초로 대 사회적인 문항을 추가한다.
 - ②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한다.
- 2. 조사결과 발표 세미나
 - ①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 ②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지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교회와 성도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한다.

일정

내용	201	6년	2017년				비고	
lio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177	
검토위원회 및 문항구성	•	•	•					
여론조사 실시			•				1월 20일(금)~21일(토)	
분석 및 연구				•				
결과발표 세미나					•		3월 3일(금)오전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	
후속-교회신뢰회복운동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1,60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30만원	3회 × 10만원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10만원	배너홍보, 홍보물 제작 등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50만원	자료집 등			
강사비(강의비,원고비 등)	170만원	연구비(100만원), 발제비(70만원) 등			
진행비(대관비,간식비 등)	1,340만원	여론조사비(1,320만원), 발표세미나			
현재 후원액	1,303만원	분당우리교회 500만원, 울산교회 500만원, 홍성사 100만원, 좋은나무교회 50만원, 문화와설교연구원 50만원 등			

열매(기대효과)

1. 실증적인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신뢰회복 방안연구에 기여

50 |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

3. 공명선거운동- 19대 대통령선거

■ Talk·Pray·Vote 캠페인,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개표참관단 활동

취지

- 1.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기독교 내 일부세력의 그릇된 정치개입을 견제한다.
- 2. 공명선거운동에 앞장섰던 기윤실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는데 힘을 보탠다.

내용

- 1. Talk, Pray, Vote 캠페인
 - 선거에 대해 이야기(talk)하고, 기도(pray)하고, 투표(vote)하자는 내용 및 선거법 위반여부 등
 - 캠페인 소개 블로그 포스트 홍보 및 캠페인 전단지를 PDF파일로 올려서 자유롭게 배포함
- 2. 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각 교회가 선거중립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이를 그리스도인들 이 감사하자는 내용의 호소문 발표
- 3. 기독교 팩트체크
 -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 "기독교 팩트체크"
 - SNS 상에서 퍼지는 루머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서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기윤실이 가진 공신력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시함
- 4. [연대] 개표참관단 활동
 -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에 연명, 필요시 약간의 분담금 등 최소한 협력함

일정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기획		•			
Talk, Pray, Vote 캠페인				•	
교회 선거중립 캠페인				•	
기독교 팩트체크					
[연대] 개표참관단				•	
후속					•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420만원	
회의비(기획비 등)	50만원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250만원	배너홍보, 웹자보, 캠페인 홍보물 등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20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100만원	팩트체크, 개표참관단 활동 등

열매(기대효과)

- 1.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 유도 및 교회의 선거법 준수 촉구
- 2.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루머 차단
- 3. 공명선거 진행에 기여

4. 부채해방프로젝트

■ 부채로 고통당한 이웃 해방프로젝트

취지

- 1.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고통당한 이웃으로서 채무자를 주요대상으로 지원방안 모색한다.
- 2.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양극화 해소 실천과제 제시한다.

내용

- 1. 부채간담회
 - ① 1차 가계부채 1300조원시대의 기독교윤리
 - ② 2차 빚으로 지탱하는 사회를 구원하는 정책
 - ③ 3차 부채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 2. 부채해방프로젝트
 - ① 모금 : 목표금액 1,000만원 (약 100여명, 채무원금 45억원 소각)
 - ② 부실채권 매입: 주빌리은행/희망살림을 통해 부실채권 매입
 - ③ 부실채권 소각: 매입된 부실채권자 및 채무원금에 대한 소각 퍼포먼스
 - ④ 안내장 발송 : 탕감된 채무당사자들에게 안내장 발송

일정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획	•											
간담회						•	•	•				
브치카마									•	•	•	
부채해방 프로젝트												
												•
후속												

예산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총 계	400만원	*부채해방프로젝트 모금액은 산정하지 않음
회의비(기획비 등)	50만원	5회×10만원
홍보비(제작비,광고비,발송비 등)	50만원	웹자보 등 광고 홍보물
인쇄비(제작비,발송비,복사비 등)	50만원	배포자료, 현수막 등
강사비(강의비,원고비 등)	135만원	3회 X 3명 X 15만원
진행비(대관비,간식비,단기인건비 등)	65만원	장소대여, 간식비 등

열매(기대효과)

- 1. 청년실업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따른 부채 문제에 대한 기독교 내 인식확산
- 2. 교회 50곳, 개인 650명 모금액 1,000만원, 채무자 100명 부채탕감

5. 사무처 사업

■ 기윤실 창립 3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현안대응

기윤실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

- 기윤실 비전수립 컨설팅 : 기윤실 운동의 중장기전략 및 미래방향 연구
- 30주년 기념식 : 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인가 (가칭) 회원, 상근활동과, 자원활동가 등 기윤실 구성원이 기윤실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윤실 운동에 대해 돌아보고 내다보는 시간으로 삼는다. (2017년 6월 예정)
- 30주년 기념 자료집 : 나와 기윤실 (가칭) 기윤실 30년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소감이 고루 담긴 자료집을 발간한다. (2017년 12월 예정)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운동

- 한국교회와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 기윤실이 먼저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종교개혁 정신 및 기독교 윤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 기도운동 "정의의 숨결로, 세상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연합기도회로 모인다.(2월 27일, 메시지 : 이만열교수, 김회권교수)

전국기윤실협의회

- 대표자회의 : 5월 중 개최한다.
- 실무자회의 : 하반기에 교육 등 포함하여 1박으로 개최한다. (16년 실무자회의 의결사항)
- 전국기윤실수련회 :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하며, 전국기윤실협의회 멤버십을 강화 하다.

이사회/상임집행위원회

○사업, 재정 및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

강사인명사전

- 기윤실 임원들과 기윤실 행사에 참여했던 강사들과 강의 주제들을 정리한 책자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중 기윤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기윤실 운동이 확산되고 한국교회에 유익한 강의를 전달하는 매개가 되도록 한다.

웬운동

- 기윤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합하여 한 개의 채널로 운영한다.
- 기윤실 소식 전달, 회원과의 소통, 협력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슈대응운동

- 청탁금지법 교계매뉴얼, 종교인성범죄특별법 후속 진행
- 기타 현안 대응

6. 자치기구 • 협력운동 소개

■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소장: 이장형)

○ 2017년 기윤실 30주년을 맞아 30주년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공동위원장 : 조흥식, 라창호)

- 사회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은 2013년부터 기존 사회복지 외에 전도(선교), 교육 등의 분야별 심사를 추가해 <좋은교회상>으로 심사,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03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좋은교회상을 통해 그동안 여러 교회를 시상 해 왔는데, 2017년에도 좋은교회상 시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성서한국

- 성서한국은 2002년부터 성서한국 전국대회, 성서한국 지역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 사명에 헌신 할 다음 세대를 발굴, 동원, 훈련, 지원, 파송하는 하나님나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7년에는 "청년이 묻고 소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

- 교회세습반대운동은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 등 9개 단체가 결성하여 활동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www.seban.kr>가 2016년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 출간을 기준으로 상시활동에서 필요 시 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3년부터 3년동안 각 교단의 "세습방지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기감, 기장, 예장통합 등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 이외에도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안내서 발행 및 교회세습 반대 지역강연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2005년부터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 기독경영연구원, 한빛누리재단이 <교 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an.or.kr>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교회재정 운영규정 제정 및 연례적으로 교회재정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움직임에 따라 목회자 소득세 신고대행 지원활동 및「한손에 잡히는 교회재정」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계획안

1. 수입

	수	입			
계정과목	2016 예산	2016 김	결산	2017 예산	비고
게o피크	금액	금액	달성률(%)	금액	
I. 사업수익	346,000,000	303,093,670	87.60%	301,000,000	
1. 회비	156,000,000	143,267,000	91.84%	153,000,000	
(1)회원회비	120,000,000	105,836,000	88.20%	115,000,000	10% 증액(신규개발)
(2)이사회비	8,000,000	11,290,000	141.13%	12,000,000	
(3)지역회비	28,000,000	26,141,000	93.36%	26,000,000	
2. 일반후원금	103,000,000	94,940,000	92.17%	96,000,000	
(1)교회,기관후원금	103,000,000	94,940,000	92.17%	96,000,000	
3. 특정후원금	75,000,000	52,030,000	69.37%	44,000,000	
(1)목적후원금	50,000,000	34,000,000	68.00%	34,000,000	좋은교회상
(2)지원후원금	25,000,000	18,030,000	72.12%	10,000,000	여론조사, 단행본 등
4. 사업수입	12,000,000	12,856,670	107.14%	8,000,000	
(1)사업후원금	5,000,000	8,563,870	171.28%	3,000,000	사업분담금 등
(2)등록비	3,000,000	1,130,000	37.67%	2,000,000	윤리실천학교 등
(3)자료판매비	4,000,000	3,162,800	79.07%	3,000,000	불편레시피 판매 등
皿 사업외수익	2,000,000	3,565,883	178.29%	2,000,000	
수입 총계	348,000,000	306,659,553	88.12%	303,000,000	

- ① 후원금은 2015년, 2016년의 추이와 2017년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 ② 좋은교회상 목적후원금은 예년 수준에서 후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③ 지원후원금은 사업별 프로젝트모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 2017년 <사업행사비> 예산 세부 내역

	회의비	홍보비	인쇄비	강사비	진행비	합
자발적 불편운동	500,000	2,500,000	2,500,000	-	400,000	5,900,000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300,000	100,000	500,000	1,700,000	13,400,000	16,000,000
종교개혁500주년 기도회	500,000	250,000	250,000	500,000	1,500,000	3,000,000
19대 대선 공명선거운동	500,000	2,500,000	200,000	ı	1,000,000	4,200,000
부채해방 프로젝트	500,000	550,000	1,000,000	1,350,000	600,000	4,000,000
시회복지위원회(교회상-목적사업비)	ı	-	ı	ı	34,000,000	34,000,000
기독교윤리연구소	100,000	100,000	150,000	450,000	300,000	1,100,000
사무처 사업비	2,500,000	500,000	4,650,000	1,850,000	3,010,000	12,510,000
이슈대응운동	ı	200,000	200,000	ı	500,000	900,000
협력사업비	-	-	-	-	-	3,390,000
합 계	4,900,000	6,700,000	9,450,000	5,850,000	54,710,000	85,000,000

2. 지출

	지	출			
게저기다	2016 예산	 2016 길	열산	2017 예산	비고
계정과목	금액	금액	달성률(%)	금액	
표. 사업비용	346,000,000	314,080,673	90.51%	301,500,000	
1. 인건비	166,000,000	166,333,637	99.24%	131,500,000	
(1)급여및상여	142,000,000	138,753,579	97.71%	112,000,000	정간사 5명
(2)협동간사사례비	3,500,000	4,300,030	122.86%	500,000	협동간사 1명
(3)퇴직급여	10,500,000	12,150,658	100.48%	9,500,000	
(4)4대보험	10,000,000	11,129,370	111.29%	9,500,000	
2. 사무관리비	43,500,000	48,898,040	113.95%	44,000,000	
(1)통신비	1,800,000	1,515,170	84.18%	1,500,000	
(2)교통비	800,000	918,800	114.85%	900,000	
(3)소모품비	1,000,000	809,740	80.97%	900,000	
(4)사무인쇄비	500,000	270,800	54.16%	300,000	
(5)보험료	500,000	420,440	84.09%	500,000	자동차 보험료
(6)지급수수료	4,800,000	10,807,139	225.14%	5,500,000	CMS 수수료, 감사비 등
(7)제세공과금	200,000	160,520	80.26%	200,000	
(8)수도광열비	1,800,000	2,074,689	115.26%	2,000,000	
(9)지급임차료	20,520,000	20,771,400	101.23%	20,500,000	사무실, 복사기
(10)발송비	780,000	562,660	71.85%	600,000	
(11)복리후생비	3,000,000	3,188,175	106.35%	3,000,000	
(12)활동비	800,000	591,900	273.99%	1,000,000	
(13)유지보수비	3,500,000	3,404,800	97.28%	3,500,000	회계프로그램이용비 등
(14)잡비	-	13,590	_	100,000	
(15)교육훈련비	3,500,000	2,458,110	70.23%	3,000,000	
(16)감가상각비	-	930,107	-	500,000	
3. 사업비	136,500,000	98,848,996	72.42%	126,000,000	
가.사업행사비	92,000,000	54,666,416	59.42%	85,000,000	* 세부 내역 참조
(1)회의비	4,100,000	2,127,120	51.88%		기획비/ 내부회의비 등
(2)홍보비	3,100,000	1,738,356	56.08%		제작비, 광고비, 발송비
(3)인쇄비	5,600,000	2,290,520	40.91%		자료집, 편집비 등
(4)강사비	6,300,000	5,000,000	79.37%		원고비, 강의비
(5)진행비	17,400,000	4,753,420	27.32%	20,710,000	대관비, 간식비 등
(6) 목 적사업비	50,000,000	34,000,000	68.00%		사회 복 지위원회
(7)협력사업비	5,500,000	4,757,000	86.49%		공동사업,대외분담금 등
나.홍보사업비	10,500,000	12,114,850	115.38%	10,000,000	
(1)소식지	7,500,000	6,971,030	92.95%	7,000,000	
(2)웹운영비	1,500,000	658,500	43.90%	1,000,000	
(3)도서자료제작비	-	3,360,000	-	1,000,000	
(4)홍보물제작비	1,500,000	1,125,320	75.02%	1,000,000	
다.지역사업비	34,000,000	32,067,730	94.32%	31,000,000	
(1)지역간사지원금	3,000,000	3,414,820	113.83%	2,500,000	지역간사회사분4대보험
(2)지역행사비	3,000,000	2,511,870	83.73%	2,500,000	=101 ± 01
(3)지역회비전달금	28,000,000	26,141,040	93.36%		지역후원CMS
IV.사업외비용	2,000,000	1,843,834	0.00%	1,500,000	
지출 총 계	348,000,000	315,924,507	90.78%	303,000,000	

기타토의

1. 여수기윤실의 "전남기윤실"로의 명칭변경의 건

- 2016년 06월 08일 전국기윤실 협의회에서 여수기윤실에서 ①현재 여수기윤실은 광양, 순천 등 여수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포괄할 필요와 ② 여수 지역을 넘어서는 사역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전남 기윤실"로의 명칭변경의 건을 제안
- 전남지역의 독특한 상황과 지역기윤실의 적극적인 활동의 시도를 고려하여 '전남기윤실'로의 명 칭변경의 건을 승인. 단, 순천 또는 광양기윤실 등 세부 지역에서 기윤실이 출범하는 경우 명칭 변경을 고려하기로 함
- 2016년 06월 08일 전국기윤실 협의회에서 의결 → 2017년 2월 20일 제1차 기윤실 이사회 승인

2. 기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CHRISTIAN ETHICS MOVEMENT of KOREA: 이하 본회 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 기윤실을 둘 수 있다.

제3조(사명) 본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연구, 출판, 교육 사업
- ② 캠페인
- ③ 활동모임의 조직
- ④ 기타 본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정한 사명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② 본회 제반 활동에의 참가권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정신을 실천할 의무
- ② 본회의 제반 결의사항을 따를 의무
-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초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 이사장은 의제 와 일시와 장소를 1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⑥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⑦ 제반 중요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 ⑧ 기타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괴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괴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 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

제14조(제척사유) 총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은 제척(除斥)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절 임원

제1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공동대표 7인 이내
- ③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이사장, 공동대표 포함)
- ④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① 임원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시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③ 임원을 선출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④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1/5을 초과 할 수 없다.
-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4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장과 공동대표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3절 이사회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 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 ② 연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의
- ③ 예산, 결산서의 심의
- ④ 재산 관리의 심의 의결
- ⑤ 운영규칙의 제정
- ⑥ 부이사장의 선출
- ⑦ 상임공동대표의 선출
- ⑧ 상임집행위원의 임면
- ⑨ 사무처(총)장과 운동본부장의 임면
- ⑩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 의결
- 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21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단 인사업무에 관한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회의 전에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그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장 유고시, 또는 궐위 시는 부이사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① 및 ②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위의 ③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절 공동대표

제24조(공동대표) ①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하고, 당연직 상임집행위원이다.

제25조(상임공동대표) ① 공동대표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집행위원장을 겸직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상임집행위원을 추천하고, 상임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공동대표, 운동본부장 사무처(총)장 외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7조(임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 ① 본회의 정신, 철학, 문화를 창출, 유지 보급
-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집행
- ③ 연간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의 의결
- ④ 각 운동본부와 사무처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임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⑤ 사무처와 각 운동본부, 자원활동모임 등 각 사업단위 간의 사업조정

제28조(상임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제6절 사무처

제29조(사무처) ① 본회의 제반업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화 된 본회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분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③ 사무처(총)장은 사무처의 제반 활동을 주관하고, 전국기윤실협의회를 연결, 조정한다.
- ④ 사무국장은 사무처(총)장을 도와 사무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진행한다.

제7절 운동본부 및 기타기관

제30조(운동본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한 운동본부를 둔다. 각 운동본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동역 및 연대활동 조직)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타 기관과 동역 및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부설기관) 본회는 본회의 사업을 위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절 전국기윤실협의회

- 제33조(지역기윤실) ① 본회는 사명에 공감하는 각 지역의 단체가 기윤실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지역 기윤실을 둘 수 있다.
- ② 지역기윤실은 자체 정관에 의해 구성되며 조직, 인선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연 1회 자체 총회 에 보고한다.
- ③ 본회와 지역기윤실은 서로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책임이 있으며, 본회는 지역기윤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책임이 있다.
- ④ 지역기윤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지침은 "지역기윤실 운영내규"를 준용한다.

제34조(명칭) 각 지역에 소재한 지역기윤실의 공식명칭은 그 지역의 명칭을 붙여 "OO기윤실"이라 하며, 본 회와 지역기윤실을 통칭해 '전국기윤실협의회'라 한다.

- 제35조(자격취득 및 상실, 징계 등) ① 전국기윤실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총회에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단, 활동정지 혹은 해산 후 활동재개를 희망하는 지역기윤실의 경우 전국기윤실협의회가 활동재개를 발의한 후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 ② 전국기윤실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역기윤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활동 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결의할 수 있다.

제 4 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 하고자 할 때에는 제 42조(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3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비

- ③ 보조금
- ④ 기타수입금

제39조(세입·세출 예산 및 감사)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②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한다.
- ③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5 장 보칙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한다.

제42조(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부칙

- 1. 본 정관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리스도 정신에 입각하여 통상 규례에 준한다.

제정:

1차 개정 : 1995년 3월

2차 개정 : 2000년 7월 17일 3차 개정 : 2005년 2월 21일 4차 개정 : 2017년 3월 7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립취지문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문제점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것은 우리의 안정과 인간적인 삶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 갈등과 문제점들은 상당한 부분 우리 사회 의 도덕적 타락에 근거해 있다고 본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부당한 특권과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도덕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고 있다.

한 사회의 도덕은, 물론 그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에서 부패의 뿌리가 굵어져서 사회의 도덕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 을 유지하고 높이는 책임은 무엇보다도 종교계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에 큰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독교가 그 임무를 감당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 심으로써 우리에게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안겨 주셨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 기독교가 교세 확장에는 많은 힘을 기울였으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은 강조하지 않았으며, 물질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부패에 편승하는 잘못도 많이 저질렀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수치스러운 사건에 기독 교인이 관계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너무나 뼈아프게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한 국 기독교는 이를 개탄할 자격이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정죄의 손가락을 쳐 들 권리가 없음을 통감한다.

이에 우리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조리가 우리들 자신의 불의 때문임을 인정하고 이를 회개하며 우리 눈의 들보를 먼저 뺀 다음 사회를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 독교 윤리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생활 태도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서로 고취하고자 함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평신도 운동이지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교회 운동은 아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경시하거나 윤리적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 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듭난 신자의 삶은 반드시 경건해져야 하고 세 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함에서이다. 이 순종을 개인의 삶에만 국한시 킬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의를 이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까지 확장시키고자 하 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서로 서로를 독려하고자 한다. 많은 그 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행동지침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 1.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돌보며, 자녀들을 주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쓴다.
- 2. 의 식 주와 각종 소비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 움을 줄이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지키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하여 장애자들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 3. 모든 언행을 정직하게 하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신풍조를 추방하려고 노력한다.
- 4. 모든 도덕적이고 정당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 개인적으로나 직책상 뇌물의 수수를 거부하며 탈세하지 않으며 공중도덕을 지킨다. 정당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 방법임을 인식한다.
- 5.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호하며, 특히 사회의 약자를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하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 6. 직장에서 맡은 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되 직장의 불법과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막으려 힘쓴다.

교회에 대해서는

- 7. 교회 내의 모든 사치와 낭비를 없애려고 노력하며 교우들에게 절제 생활을 권면한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 금 우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힘쓴다.
- 8. 교회로 하여금 세법, 건축법, 자동차 사업법 등 정당한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며 주위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애쓴다.
- 9. 교회에서 권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비도덕적인 수단을 통한 교세 확장을 배격하며 비교육적인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거부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 10. 기업, 언론, 출판 등 사회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진실을 확인한 후에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정계와 사회의 모든 비리와 부도덕을 시민의 자격으로 이를 고발한다.
- 11.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을 자극하는 음란매체와 퇴폐업소들의 추방에 힘쓴다.
- 12. 불의한 제도나 비도덕적이고 부당한 국가의 법과 시책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설득, 권고, 경고하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되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 13.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간의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약소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의한 침해를 감시하며 약소국의 생산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 14.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랑의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핵무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힘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리나 특권도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만 있다. 이 의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와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

1987년 12월

<u>2016년 사업평가 및</u> <u>2017년 신규사업 조사 결과분석</u>

1. 조사개요

조사 목적	2016년 사업 평가 및 2017년 신규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설문 기간	2017년 1월 02일(월)~2017년 1월 13일(금)					
설문 대상	기윤실 후원회원 및 일	일반 관심자(뉴스레티	더 회원 + 비회원)			
설문 방법	이메일 발송, 기윤실 취	홈페이지, 후원자 문	· 사발송			
		남성	29명			
	성별	여성	21명			
		미응답	0명			
		20대	5명			
	연령별	30대	16명			
		40대	10명			
		50대	8명			
참여자 수		60대	11명	총 50명		
		미응답	00명			
		평신도	44명			
	평신도/목회자	목회자	6명			
		미응답	0명			
		회원	38명			
	회원여부	비회원	12명			
	***	미응답	0명			

2. 2016 주요사업 만족도 평가

구분	사업명	4점 만점	1	2	3	4
	자발적불편운동 :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연재	3.3점	0명	8명	19명	22명
	기독교윤리실천학교 : 정치, 인공지능	3.2점	0명	10명	21명	18명
주요	교회의 사회적책임운동 : 부교역자 동역서약서	3.3점	0명	9명	17명	23명
사업	기윤실 포럼 : 양극화 포럼	3.3점	1명	5명	20명	23명
	공명선거운동 : 413총선 캠페인	3.3점	0명	11명	13명	23명
	현안대응운동 : 성명서발표	3.4점	1명	3명	18명	<u>27명</u>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윤리강령28> 단행본	3.4점	0명	5명	18명	25명
협력	사회복지위원회 좋은교회상	3.2점	0명	7명	23명	18명
사업	교회세습반대운동	3.5점	1명	3명	15명	<u>30명</u>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교회재정세미나	3.5점	1명	3명	16명	<u>28명</u>

▶ 현안대응운동(성명서 발표 등)과 주요사업 외 '협력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교회세습운동은 잠정적 활동휴면결정)

3. 운동방향을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수행할 사업은?(1~2개 선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직윤리운 동	41명(18.7%)	28명(14%)	28명(20%)	30명(17%)	8명(16%)
교회신뢰운동	61명(27.8%)	48명(23%)	37명(26%)	36명(20%)	15명(30%)
사회정치윤리 운동	37명(16.8%)	48명(23%)	29명(21%)	38명(21%)	13명(26%)
네트워크운동	31명(14.1%)	26명(13%)	7명(5%)	14명(8%)	1명(2%)
윤리연구운동	29명(13.2%)	31명(15%)	22명(15%)	34명(19%)	7명(14%)

- ▶ 기본적으로 교회신뢰운동과 사회정치윤리운동의 비율이 높음
- ▶ 2012년~2015년 평가까지는 중복투표 가능, 2016년 조사는 단일투표

4. 기윤실 소식을 주로 들으시는 통로는?(1~2개 선택)

	합
홈페이지	7명(14%)
이메일 뉴스레터	27명(54%)
페이스북 등 SNS	12명(24%)
언론(기사 및 방송)	2명(4%)
기타 : 발송된 자료 활용	1명(2%)

5. <2016년 기윤실 주요 사업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의 세습 반대 운동은 큰 교회 뿐 아니라 보통의 규모인 교회에서도 호응이 되도록 목회자와 성도의 의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윤실 자체 역량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가운데서, 위에 언급된 사업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해 주신 사무처 간사님들과 리더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비록 더 적은 수의 사업이더라도 더 내실 있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습적인 목회자 비리 시 터져 나온 기윤실의 '성명서'는 예언자적 파토스로 가득하여 악인들의 간담을 서늘케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윤실이 주창하는 하나님 나라 변혁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함. 기윤실의 활동 중 가장 돋보였음. 기윤실 성명서를 볼 때마다 '나단',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성경 속에서 튀어 나온 것 같았음.
- 자발적 불편 운동이 교회와 시회 정착이 되도록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불편레시피 책자를 사역자에게 드려도 별 관심이 없는 실정입니다).
- 일선 목회자들에 청지기 사명을 깨우는데 미진한 느낌
- 사업들을 자주 바꾸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심화 있게 추진하여 변화 되었는지까지 평가하여 종결하는 씩의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 선택과 집중
- 좋은교회상은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 것이 당연한데 상주는 것 자체가 교회가 문제 많음을 알리는 것 같아 그렇네요. 상 못 받는 교회는 더 어려울텐데~
- 현안대응운동에 있어서 단순히 성명서 발표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시위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시민단체들이 유독 무기력해보입니다
- 기독교 윤리와 사회전반에 공의회복과 경제윤리가 다르지 않다봅니다. 상식적인 거론은 선언에 불과합니다. 사회참여에 좀 더 치중하는 기윤실의 2017년도 사역을 기대합니다.

- 정치적인문제에 직접 관여 마세요. 찬반의 의견을 사회에 공평하게 표출하고 선택은 국민이 할 수 있도 록 자제하세요.
- 교회 세습과, 공명선거 관련 운동은 이미 기윤실이 cover할 범위를 벗어난 것 같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 에 역량을 쏟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아요. 반면에 교회 내 성폭력, 교회 재정 건정성, 크리스천의 자발적 불편, 부교역자 처우 및 동역 사역 등은 기윤실이 계속 감당할 부분인 것 같아요.
- 여성혐오 문제를 다룬 포럼 좋았습니다.

6. <기윤실 운동 및 기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기독교 윤리가 실천되는 세상을 만들자
- 홈페이지의 보완을 주문합니다.
- 작고 건강한 교회들과의 network 확장을 통해 교회 후원과 협력 사역을 늘려서, 기존의 성장지향형 보 수 교회에 대응되는 새로운 교회 회복운동의 연대에 함께하는 것이 어떨지
- 홍보의 무분별한 범람으로 사회가 혼탁해지는 세태를 비판하고 정화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제시 요함
- 기독교 시민단체로서 좀 더 공격적이고 행동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범죄 등 사회법을 어긴 목회자들이 절대로 다시 목회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의사표현 및 성명서, 행동을 보여주기 바랍 니다. 회원들을 좀 더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실천력이 약한 것 같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계획단계부터 투명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 좋은 단체이고 좋은 활동이 많은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쉽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 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 보수와 진보의 중간에서 성경적 바탕을 두고 대안을 제시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운 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귀한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관심과 후원 못 드려 늘 죄송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핵, 지진 등 '환경' 관련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예)녹색당 등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 대선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음.
- 기윤실 조직자체가 한국사회에서가장윤리적이고가장신뢰할만한가장운동성있는조직이되기위한끊임없는고 민이필요함.
- 사회전반의 공의와 경제윤리가 회복 되도록 활동적인 사역을기대합니다. 개인윤리를 넘어선 사회윤리 확 장에 힘써주십시오.
- 제발 사회, 정치 분야에서 특정집단에 찬성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끌어 주세요.

기윤실 발간 자료 소개(2007년~2016년)

	WT	
	범주	사업명
1 / NEW 74-98-99-98-99-98	공공신학	• 「공공신학」 단행본(예영, 2009.4)
AJESTO DE PREM	공명선거	 기독교와 정치실천 컨퍼런스(2007.7) 기독유권자운동 - Talk, Pray, Vote 캠페인(2010~2016년)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단행본(IVP, 2012.3)
우 다 이 왕이에요 - 나 이 생 이 생 이 생 이 생 이 생 이 생 이 생 이 생 이 생 이	교단선거법	교단 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2012.8) 교단선거법 개정안(2013~2014년) •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2013.8)
Aoce	교회신뢰회복/ 신뢰도 여론조사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2007.5) 한국교회신뢰지표(2007.11)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2008~2010년,2013년)
### A PART OF THE		 교회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대중좌담회(2013.1)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심포지엄(2013.2) 교회세습법 제정을 위한 포럼(2013.7) 변칙세습포럼(2015.5) 교회재정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2008.4) 2011 교회재정세미나 - 재정보고의 정석(2011.11) 기독교연합기관 재정운용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2.6) 2012 교회재정세미나 - 교회와 세금(2012.11) 2013 교회재정세미나 -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2013.11) 2014 교회재정세미나 - 공개해도 괜찮아(2014.11)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단행본(뉴조, 2015.1)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좌담회(2015.6) 2015 교회재정세미나 -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2015.11)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2016.1)(2016.02.02) 「교회세습, 하지맙시다」(2016.05.25)
ラリストサ A3 200 - 1	목회자윤리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2010.12) 목회자윤리 연속 심포지엄 (1)목회자와 돈(2011.10) 목회자윤리 연속 심포지엄 (2)목회자와 성(2012.10) 목회자윤리 연속 심포지엄 (3)목회자와 교회정치(2013.5) 「목회자윤리강령 28」(2016.06.08)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2016.12.22)
S (correlation)	사회복지/ 자살예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1회~10회), 좋은교회상(2013~2016년)한국교회를 위한 자살예방 가이드북(2011.9)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사회적책임/ 지역공동체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2008.10)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환경편(2009.4)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문화편(2009.6)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대안경제편(2009.9)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 교육편(2009.12)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2009.11/2010.8)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섬김 보고서(2010.1)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백서(2010.2) 2010년 기독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2010.7) ISO26000의 눈으로 본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2010.10)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세미나(2011.5) 워크숍(2011.11) 협동조합과 교회 심포지엄(2012.11.) 한국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 심포지엄(2015.5) 부교역자 동역서약서 모범안(2016.06.10) 여성혐오에 대한 기독교의 반성(2016.07.14)
2015년 11월 27일(공) 오후2시 시교육리였는세상 대당당 환경 대한민대학교 (교육 대학교	양극화	 전월세대란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2011.4)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서적 실천 포럼(2015.11) 한국경제 양극화 진단과 대안 포럼(2016.04.01) 양극화와 한국사회의 갈등현상 : 주거 교육 세대 노동 포럼(2016.04.25)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모색 포럼 (2016.08.11)
5	자발적 <u>불</u> 편운동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2013~2016년)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단행본(기윤실, 2014.4)
행복을 취반 불편레시피30 기료실시대역용으로 일반가면도요	저작권운동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2007.5) 저작권은 생활입니다 - 교회저작권 가이드북(2007.11)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2011.8) 표절과 한국교회 포럼(2015.8)
1 constituents	환경	교회, 핵에너지를 넘어 대안을 생각하다 심포지엄(2013.12)재생종이 사용 캠페인(2009~2015년)

※ 모든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단행본 및 일부 자료 제외)

전국기윤실협의회 소개

	대구기윤실		대전기윤실
 대 표	이용규(불꽃치과의원 원장)	대 표	박규용(한울교회 담임목사)
	장영일(범어교회 담임목사)		막성규(잠따란아이늘의교회)
실 무 자 연 락 처	노동욱 국장 053-959-4628, dgcemk@daum.net	실 무 자 연 락 처	
	부산기윤실		
			여수기윤실
대 표	김성인(예 출판디자인 대표)	 대 표	곽종철(여수은현교회 장로)
대 표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최현범(부산중앙교회 담임목사)	대 표 	김천석(전남대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박세훈(여수성결교회 담임목사)
실 무 자	가정호 사무처장, 노행종 협력간사	실 무 자	
연락처	051-462-1558, mento123@hanmail.net	연 락 처	
	울산기윤실		익산기윤실
대 표	양성태(태화교회 담임목사) 이창희(우리들교회 담임목사)	이 사 장	권택용(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교수)
실 무 자		실 무 자	
연 락 처	010-2565-5208 w2820691@naver.com	연 락 처	010-8442-1091, worship4620@hanmail.net
	인천기 윤 실		전주기 윤 실
대 표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홍섭(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우남식(대학마을교회 담임목사) 이종전(어진내교회 담임목사) 이진오(더함공동체교회 담임목사)	대 표	오성택(남전주성결교회 담임목사)
실 무 자	12—(1888 11—1881 17)	실 무 자	김윤배 사무국장
연 락 처	010-3231-9265, ihomer@hanmail.net	연 락 처	
	진주기윤실		청주기윤실
대 표	한영수(작은교회 목사)	 대 표	박대훈(서문교회 담임목사)
실 무 자	박용수(양지초등학교 교장) 김한중 사무국장		한규영(충북대 명예교수) 오동근 사무국장
열 구 시	110-7280-3009 suhbkim@empas.com	실 무 자 연 락 처	<u> </u>
	서울기윤실		활동준비 및 해외
			글이군이 못 에지
<u> </u>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주기윤실(준) (김광종 사무국장)	
	배종석(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010-9744-1477, hymn4747@hanmail.net	
대 표	정병오(서울시 오딧세이학교 교사) 정현구(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 ,
	O단 I (시즌 OO포지 ᆸᆸᆿ시)	LA기윤실 (유용석 장로)	
사모로	박제민 팀장, 박진영 팀장,	www.lacem.org, ggopemu@gmail.com 워싱톤기윤실 (강창제 장로, 예덕천 집사) www.usacem.org, dcyeh1@gmail.com	
실 무 자	김현아 간사, 윤신일 간사		
연 락 처	02-794-6200, cemk@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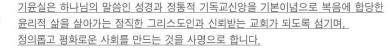
※ 각 지역 홈페이지 안내: www.지역한글이름기윤실.net & http://지역영문이름.cemk.org 예) www.대구기윤실.net / http://daegu.cemk.org

기독교유리실처운동

www.cemk.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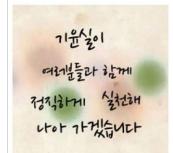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자문위원(창립발기인)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 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가?'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며 온전한 일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홍정길 이사장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 이사장: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공동대표: 정병오(상임, 서울시 오딧세이학교 교사), 배종석(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현구(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기윤실 운동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

■ 총회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가입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집은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앙코르지, 그린라이트)에 인쇄했습니다.

